관세연구 20-01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 비교연구

2020.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변 달 수 특수전문직(관세사)

목 차

Ⅰ. 서론 ····· 7

Ⅱ. 통관업 담당자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모범관행 ····· 11
1. 관세사 관련 국제적인 기준 및 모범관행 ····· 11
가. WCO 무역원활화협정 ····· 11
나. WCO 관세사 지침 ····· 14
다. WCO 관세사에 대한 연구 ····· 18
라. IFCBA 관세사 자격에 대한 모범관행 모델 ····· 24
마. 기타 관련 연구 ····· 27
2. 국제물류운송인 관련 국제적인 기준 및 모범관행 ····· 29
가. FIATA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한 모범관행 연구 ····· 29

Ⅲ. 우리나라의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 ····· 33
1. 관세사의 진입 요건 ····· 33
가. 자격의 정의 ····· 33
나. 자격 선발 방식 및 응시 ····· 34
다. 등록 및 개시 ····· 34
라. 기타제도(통관취급법인) ····· 37
2. 관세사의 서비스 제공 요건 ····· 38
가. 직무범위 ····· 38
나. 의무 ····· 39
다. 규제 ····· 42

라. 교육 ····· 44
3. 국제물류주선인의 진입 요건 ····· 44
가. 자격의 정의 ····· 44
나. 등록 및 개시 ····· 45
4. 국제물류주선인의 서비스 제공 요건 ····· 51
가. 직무범위 ····· 51
나. 의무 ····· 52
다. 규제 ····· 52
라. 교육 ····· 55

Ⅳ. 주요국의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 ····· 56
1. 미국 ····· 56
가. 관세사의 진입 요건 ····· 56
나. 관세사의 서비스 제공 요건 ····· 61
다. 국제물류운송인의 진입 요건 ····· 68
라. 국제물류운송인의 서비스 제공 요건 ····· 73
마. 보안강화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정 내용 ····· 78
2. 중국 ····· 84
가. 관세사의 진입 요건 ····· 84
나. 관세사의 서비스 제공 요건 ····· 91
다. 국제화물운송업자의 진입 요건 ····· 95
라. 국제화물운송업자의 서비스 제공 요건 ····· 97
3. 일본 ····· 100
가. 통관사의 진입 요건 ····· 100
나. 통관사의 서비스 제공 요건 ····· 104
다.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진입 요건 ····· 109
라.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요건 ····· 113
4. 독일(EU) 및 영국 ····· 117

가. 세관대리인 및 국제물류운송인의 진입 요건 ····· 118
나. 세관대리인 및 국제물류운송인의 서비스 제공 요건 ····· 124
다. 기타 ····· 133

Ⅴ. 국제 비교 및 소결 ····· 134
1.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 ····· 135
가. 진입: 자격 및 교육 요건 ····· 135
나. 서비스 제공: 통관취급법인 ····· 137
2. 국제 물류 환경 ····· 138
가. 수입자 및 관세사 간 보안환경 ····· 138
나. 수입자-국제물류운송인-관세사 간 보안환경 ····· 140
다. 국경 간 보안환경 ····· 141
3. 기술혁신에 따른 관세행정 ····· 142

참고문헌 ····· 144

표 목차

〈표 Ⅱ-1〉 관세사 면허 관련 모델체크리스트 ····· 23

〈표 Ⅲ-1〉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제도 비교 ····· 50
〈표 Ⅲ-2〉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 54

Ⅰ. 서론

□ WTO 체제하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FTA 증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 따라 무역의 복잡성이 증대되며 새롭고 난해한 관세행정이 증가하는 등 국제무역 환경과 관세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통관이 정착되고, 해외여행자와 해외직구와 같은 개인무역이 증가하며 무역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세관의 안전관리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음

□ 이렇듯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하에서 신속 정확하고 안전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관업 담당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 향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에서는 교역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역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이른바 교역안전과 원활화를 이루기 위해 2017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와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he Trade Facilitation)」을 발효함

○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르면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로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입통관은 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통관업 담당자는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등으로 1975년 관세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출입신고, 품목분류 등 통관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편의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음[1)]

---

1) 김두형, 「관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방안」,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최근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따라 관세사의 자격요건, 화주와 국제물류운송인[2] 및 관세사 간 보안, 제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따른 관세행정, 직무범위 등 다양한 통관업 제도 관련 논의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관업 담당자에 대한 국제모범관행을 비롯한 주요국 통관업 담당자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조사·비교하여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통관업 담당자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진입 요건과 서비스 제공 관련 요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음

- 진입 요건은 자격의 정의, 자격의 선발방식 및 응시, 등록 및 개시로 분류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관련 요건은 직무범위, 의무, 규제, 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음

○ 특히 해외 국가의 경우 관세사가 아닌 국제물류운송인이 별도의 자격 취득 없이 통관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관세사 제도를 주요 조사 범위로 하되 통관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한 규정 및 제도 또한 조사하였음

○ 주요국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EU 회원국인 독일, 영국을 선정하였음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흡사하게 관세사 및 국제물류운송인의 역할과 범위가 구분되어 있으며 관세사 규정의 전면 개정이 예정되어 있음
- 일본 또한 우리나라 및 미국과 유사한 형태이며 비교적 통관업에 대한 통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은 국제물류운송업체가 중국해관에 등록을 하는 경우 통관업무를 허가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통관취급법인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독일 및 영국의 경우 통관업에 대한 제한이 가장 없는 형태로 조사에 의의가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3]로 인하여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나 세관대

한국관세사학회, 2016, p. 9.

2) 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국제적인 공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바, 서론상에서는 편의상 국제물류운송인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본문의 각국 제도에서는 국제물류운송인을 지칭하는 해당 국가의 용어를 사용하였음

리인 관련 규정의 개정이 없었고, 2019년 세관대리인에 대한 지침서를 출간하여 제도 비교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통관업 담당자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각국의 관세사 및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한 각각의 제도 조사와 관세사 및 국제물류운송인 관련 업무의 내용,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 관세사와 관련한 연구로 정재호(2012)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EU(프랑스 중심)의 관세사 제도를 조사하였음

○ 김두형(2016)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사법」에 대해 등록, 직무, 사명, 벌칙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김중근(2017)에서는 국제사회의 관세사 모범관행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음

○ 국제물류업체와 관련한 연구로 김선철 외 1인(2009)에서는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체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황진회 외 5인(2011)에서는 국제물류운송업체 유관 업종 간 상호 발전 방안 및 물류 분야 인증제 사례를 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 통관업 담당자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모범관행에서는 WCO 무역원활화협정, WCO 관세사 지침, WCO 관세사에 대한 연구, IFCBA 관세사 자격에 대한 모범관행 모델, FIATA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한 모델 지침 등 관세사 및 국제물류운송인(또는 업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모범관행 연구 및 지침 등을 조사하였음

- 관세사 관련 기타 연구로 관세사 제도에 대한 최초 연구인 Ari-Pekka Hameri 외 3인(2005)의 공동연구 또한 반영하였음

○ 제Ⅲ장 우리나라의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에서는 관세사,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 통관취급법인의 진입 요건과 서비스 제공 관련 요건에 대해 조사하였음

---

3) 영국은 2018년 3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세 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31일로 이행이 결정되었음

- 우리나라의 통관업 담당자의 진입 요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요건에 대해 「관세사법」(시행령, 시행규칙),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관세사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Ⅳ장 주요국의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EU) 및 영국의 통관업 담당자 관련 진입 요건과 서비스 제공 관련 요건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Ⅴ장 국제비교 및 소결에서는 국제 모범관행, 제도 연구 및 주요국의 통관업 담당자에 대한 제도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우리나라 제도 발전을 위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제언하였음

Ⅱ. 통관업 담당자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모범관행

1. 관세사 관련 국제적인 기준 및 모범관행

가. WCO 무역원활화협정

□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 및 제정되었음

○ 무역원활화는 무역 관련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포괄하는 개념임[4)]

□ 「무역원활화협정」 제10조 제6항 '관세사의 사용'에서 통관업을 담당하는 관세사의 사용, 면허, 규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물류운송인(또는 업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현재 관세사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회원국들의 중요한 정책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되,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회원국들은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함

○ 각 회원국은 관세사의 사용에 관한 조치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공표하며 이에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Global Market Report 14-051』, 2014, p. 2.

관한 모든 변경 내역은 신속하게 위원회에 통보되고 공표되어야 함

○ 관세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칙을 적용해야 함

- 본 내용에 따라 관세사 자격 부여와 관련된 규율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하여, 관세사 자격을 통한 지대추구(rent-seeking)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5)]

□ 특히 본 내용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세사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새로운 국내 규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 교토협약에 없는 신설된 내용임[6)]

○ 무역원활화협정의 원 취지 중 하나는 관세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수출입 서류와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관세법」이나 무역 절차 관련 법의 복잡성으로 관세사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기업들이 무역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본 규정이 삽입되었음

○ 개정 교토협약에서는 일반부속서 제8장에서 관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협정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음

- 개정 교토협약의 표준 8.1에서는 수출입자가 관세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표준 8.2에서는 관세사 등 제3자가 수출입자의 대리자 역할을 할 때 관세와 세금 등과 관련한 이상이 있을 경우 이들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표준 8.3에서는 수출입자가 관세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며 표준 8.4에서는 대리인(관세사)은 신고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표준 8.5에서는 세관이 제3자(관세사)가 무역 관련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준 8.6과 8.7에서는 세관이 제3자와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이러한 경우 그 이유를 제3자에게 서류형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 관세청,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2014. 7., pp. 174~177.
6) 관세청, 2014, pp. 174~177.

- 개정 교토협약은 관세사 사용 의무화나 자격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기업이 관세사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 관세사들이 충분히 수출입업자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세사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음
-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하여 WCO에서는 관세사를 관리하고 이들과 같이 업무를 보는 데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관세사들의 프로필을 유지하고 관세사들이 제출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통관 절차를 자동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를 허용하려면 이들의 교육 및 능력을 위험관리 측면에서 관찰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음

□ WCO에서는 국제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위해 공통된 관세 용어를 확립하고자 특정 관세 용어에 대해 단일화된 정의를 규정하여 『관세전문용어집(Glossary of International Customs Terms, 이하 관세전문용어집)』을 발간하고 있음[7)]

□ 『관세전문용어집』의 정의에 따르면 통관대리인(Customs clearing agent)은 물품 세관통관을 위한 사업을 이행하는 자 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세관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자를 의미함

○ 특히 『관세전문용어집』에서는 통관대리인의 종류로 통관대리인(Customs agent), 관세사(Broker), 국제물류운송인(Freight forwarder)을 선정하고 있음

○ 몇몇 국가의 경우 통관대리인 또는 관세사가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자격을 받아야 함

○ 제3자는 물품 수입, 수출, 이동, 장치 등과 관련해 타인을 위해 혹은 대신하여 세관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함

---

7) WCO, *GIOSSARY OF INTERNATIONAL CUSTOMS TERMS*, WCO, 2018, http://www.wcoomd.org/-/media/wco/public/global/pdf/topics/facilitation/instruments-and-tools/tools/glossary-of-international-customs-terms/glossary-of-international-customs-terms.pdf?db=web, 검색일자: 2020. 5. 25.

나. WCO 관세사 지침

□ WCO는 무역원활화협정 및 개정 교토협약을 반영하여 2018년 『관세사 사용에 대한 관세사 지침(Customs Brokers Guidelines, 이하 관세사 지침)』을 발간하였으며 본 지침은 국제 공급망에서의 세관 및 관세사의 협력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8)]

○ 관세사와 관련한 프레임워크, 필요한 지식, 업무 이행 및 관리,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세관 및 관세사의 협력, 관세사의 윤리, 보수, 능력 개발, 관세사협회의 구조 및 역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침서의 서두에서 관세사는 단순한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또는 서류의 접수 이외에 포괄적인 컨설팅으로 담당 업무가 전환되고 있으며, 공급망에서 무역업자를 대신하여 기타 운영자들과 협력한다고 설명하고 있음[9)]

○ 기타 운영자들은 항구 및 터미널운영자(port·terminal operators), 국제물류운송인(freight forwarders), 수송자·업체(carriers·agents), 보세창고운영자(warehouse operators), 운송업자(transporters) 등임

○ 그 밖에도 공급망에서 관세사들의 서비스는 관세 환급, 하역, 창고업, 복합운송, 포장, 혼합, 보험, 운반서비스, 분쟁처리 및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며 관련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사의 의무와 책임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므로 몇몇 행정부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정보제공의 정확성 등 전문적인 수행과 기업윤리 등을 요구하기도 하며 일반적인 관세사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음[10)]

○ 세관 및 기타 법적 요구 이행

---

8) WCO, *WCO Customs Brokers Guidelines*, 2018. 6., p. 3.
9) WCO, 2018, p. 3.
10) WCO, 2018, pp. 11~12.

○ 고객에게 다양한 이행 요구 자문
○ 고객 알기 제도(Know Your Customer)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 정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로 알려진 문서, 클레임 등에 대해 제출, 청구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 고객을 대신하여 제출된 문서에 기반한 관세 및 제세금 기타 부과금 등의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 보류 중인 공적인 문제 등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지 말 것
○ 그 어떤 통관업 또는 거래 이행 또는 촉진을 위해 그의 대리인으로 승인된 고용인을 제외한 자격 없는 자에게 이름, 허가 또는 자격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적절한 당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보를 위한 직·간접적인 확보 또는 시도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세관의 감사 및 회계와 관련한 특정 기관의 기록 보관 및 유지
○ 높은 전문적 기준, 투명성, 효과성, 기업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
○ 높은 서비스 제공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최고의 신속성, 효율성, 통합성 있는 업무 이행
○ 세관 및 기타 정부기관과 수행 개선을 위한 협력
○ 관세사와 무역업자 간 거래계약 이행을 위한 행위

□ 관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관세사 지침』에서는 국가별로 매우 범위가 다양한 것을 인정하되 일반적인 범위로 9가지를 예로 들고 있음[11)]
○ 수출입, 보세창고 관련 세관 및 기타 정부기관이 요청하는 문서 준비
○ 수출입 및 환적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보세창고 관련 세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데이터, 기타 수출입 문서의 작성 및 제출
○ 관세 및 제세금 기타 수출입에 부과되는 부과금의 납부

11) WCO, 2018, pp. 10~11.

○ 기타 정부기관, 세관 당국에 의해 검사를 받게 되는 물품의 준비 및 제출
○ 세관 신고의 수정 및 관세·제세금 환급 신청
○ 품목분류, 가격평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결정 또는 수출입과 관련한 정부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자문
○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출입 및 환적과 관련된 데이터와 문서의 지원 및 기록 유지

□ WCO『관세사 지침』에서 업무 이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예로 선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12)]
○ 관세사 자격증명을 제시하고 업무실행이 가능한 적정한 조건의 유지
○ 지정된 세관 부서에 업무형태, 파트너십, 법인 설립 등의 업무조건 변경 내용을 즉시 알릴 것
○ 관세사는 충분한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즉각적인 대응, 납부, 고객의 수출입 관련 증거, 거래 관련 증거 등을 고객뿐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에도 제공할 것
○ 정확한 신고, 잘못된 오류 및 정보 누락에 대해 고객에 자문할 것
○ 관세사가 고용한 자가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하며 모든 세관 관련 고용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관세사로서 이행한 거래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 청구서, 계정, 명세서, 송장, 위임장 등 문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고객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
○ 관세사로서 의무의 미이행, 위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자격 유예, 정지, 벌금, 처벌, 기소 등의 형벌을 부과할 것

□ 세관과 관세사의 협력은 물품의 국경 간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성립하고, 특히 관세사가 정부의 법 및 규칙 준수뿐 아니라 정확한 세관 신고를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13)]

12) WCO, 2018, pp. 14~18.
13) WCO, 2018, pp. 19~21.

○ 특히 교토협약이나 AEO, WTO 무역원활화협정 등에 따라 세관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세관은 관세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나 위조물품과 같은 불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하는 데 있어 관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관세사는 타당성 및 정확성 측면에서 고객을 격려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양질의 데이터를 세관에 제출할 수 있게끔 유도함
○ 이 밖에도 세관 및 관세사의 활발한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전달 향상, 공급망 보안 개선, 법규 준수도 향상, 무역원활화 촉진, 데이터의 질 향상, 세수확보 향상, 거래비용 감소, 전문성 향상, 기업윤리와 통합성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자원관리 등

□ 고객, 관세행정 조직, 기타 물류체인 파트너로서 관세사가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7가지를 예로 들고 있음[14)]
○ 개인적인 행위와 전문적인 실행: 법규를 준수하며 고객의 이익실행, 도덕성, 존엄성, 통합성을 지키고 전문적으로 행위할 것
○ 독립성: 공정한 의견과 객관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위할 것
○ 유능성: 고객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능력을 개발해야 함
○ 전문적 기밀 유지: 정보의 기밀 유지, 개인정보 보호 등
○ 광고 제한: 행동 규칙, 전문 기밀 유지 및 법적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문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게시하여 광고할 수 있음
○ 관세사협회(community) 내의 의무: 전문적이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며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해야 함
○ 정부기관, 연방, 협회 및 기타 단체에 대한 의무: 모든 관계에서 전문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해당 규칙, 지침 및 심의에 따라야 함

14) WCO, 2018, pp. 22~25.

□ 세관 서비스에 대한 관세사의 수수료 및 요금은 자유경쟁 시장원칙에 따라 정해지지만 정부 당국이 무역업자들과 관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금을 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모니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5)]

□ 능력 배양과 관련하여 학습현장 교육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사용하여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할 것과 정부 차원에서도 적절한 정책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부기관, 관세사 관련 협회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적 능력 개발에 대해 명시함[16)]

다. WCO 관세사에 대한 연구

□ WCO 정책위원회에서는 2016년 관세사에 대한 연구보고서(*WCO Study Report on Customs Broker*)를 발간하였음[17)]

○ WCO에서는 2014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사 제도의 관행에 대해 관세사 자격 취득 기준 및 규정, 세관과 관세사 간의 협력, 도전과제 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WCO 회원국의 55%에 해당하는 99개 회원국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4개국을 제외한 95개 회원국에서 무역업자를 대리하여 통관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는 관세사, 대리인, 제3자 등이 존재하였음

□ 72개의 회원국은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관세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개 회원국은 관세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18)]

○ 14개 회원국의 경우 통관업무 중 정해진 기준 및 물품종류에 따라서 가전용품, 중고차량, 비상업적 샘플 및 견본으로서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관세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3개 회원국의 경우 통관 시 관세사를 제외한 제3

15) WCO, 2018, p. 25.
16) WCO, 2018, pp. 26~31.
17) WCO, *WCO Study Report on Customs Brokers*, 2016. 6., p. 7.
18) WCO, 2016, p. 8.

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관세사 면허 규제에 대한 제한 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는 다음과 같음[19)]

○ 관세사 면허 관련 제도의 부재로 해당 요건이 없는 국가는 독일, 홍콩, 중국, 마카오, 스위스임

○ 관세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아이티, 몽골, 모잠비크, 파푸아뉴기니, 상투메 프린시페, 필리핀, 스리랑카, 탄자니아 등이 있음

○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시험을 통해 관세사 면허를 교부하며 의무적으로 관세사를 사용하는 국가는 보츠와나, 카메룬, 칠레, 콩고, 코스타리카, 쿠웨이트, 페루, 남아프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우루과이, 태국 등이 있음

○ 관세사뿐 아니라 무역업자에게도 전문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여 무역업자 스스로 통관 절차 수행이 가능하고 선택적으로 관세사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미국,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인도, 싱가포르, 모로코 등이 있음

□ 84개 회원국은 관세사 또는 적용 가능한 상황에서 제3자가 통관을 하기 전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11개 회원국의 경우 누구든지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20)]

○ 84개 회원국 중 55개 회원국은 관세사가 세관 또는 기타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할 것을 선결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53개 회원국은 특정규제 또는 면허요건, 몇몇 국가는 등록요건 또한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관세사 규제 사유에 대해 70개 회원국에서는 통관 원활화 및 무역업자 보호를 위해 관세사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61개 회원국은 관세사 전문성에 대한 기준 설정 및 벌금과 제재 등의 부과, 58개 회원국에서는 법규 준수 요건 및 조세징수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음

□ 면허관세사의 형태에 대해 45개 회원국에서 개인 및 법인(companies)이 가능하다

19) WCO, 2016, p. 9.
20) WCO, 2016, p. 10.

고 응답하였고, 24개 회원국에서는 법인(companies or legal persons)만이 면허관세사가 가능하며 15개국에서는 면허관세사는 개인(individual or natural persons)만 가능하다고 응답함[21)]

○ 은퇴하거나 전직 세관 출신 직원의 경우 일부 회원국에서는 관세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관세사 또는 관세 관련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고 함

□ 관세사의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50개 회원국에서는 정기적인 심사 및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세사에 대한 벌금 및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음[22)]

○ 54개 회원국에서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면허를 발급하고 39개 회원국에서 특정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가 이루어졌을 시 면허를 발급하며 50개 회원국에서 법규 준수가 지속되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음

○ 각 회원국은 관세사를 비롯하여 제3자의 법규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 유예, 취소, 벌금, 기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치라고 응답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제재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적용 제재가 달라짐

□ 관세사 면허의 요구조건에 대해 국가별로 법에 따라 요구 유무 및 내용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23)]

○ 통관 및 관련 법에 대한 지식, 무역 관련 운송 및 재정 관련 문제, 성실한 업무이행 기록, 최소한의 교육요건, 재정능력 및 지불능력, 최소한의 업무경력, 전자전송 능력에 대한 최소 몇 시간의 교육요건, 거주조건 등

- 40개 회원국은 전자적 전송 능력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단일화된 창구 및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이하 ICT)와 관련

21) WCO, 2016, p. 12.
22) WCO, 2016, pp. 13~14.
23) WCO, 2016, p. 16.

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관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각 회원국이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92개 회원국이 응답한 수출입 및 기타 정보 신고 및 통관을 위한 서류준비(품목분류 포함)에 대한 업무가 담당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24]

○ 그 밖에도 정부 관련 기관의 증명, 허가 등을 위한 소통, 제세금의 납부, 환급, 사후감사, 다양한 규정 관련 자문, 분쟁처리, 물품 반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

□ 설문에 따라 각 회원국이 응답한 관세사의 업무상 의무는 다음과 같음[25]

○ 수출입자와 함께 적절한 기관·협약에 따라 행동할 것, 다양한 요구조건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할 것, 고객의 사전정보 확인, 신고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 확보, 고객을 대신하여 관세 및 제세금 기타 비용 지불, 세관의 조사 및 감사를 위한 기록의 유지 및 보관, 높은 투명성·윤리·효과성·전문적인 기준 유지 등

○ 기타로 면허를 대여하지 말 것, 세관과의 협업 및 이와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 등이 있었음

□ 관세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81개 회원국은 자유경쟁원칙을 따르고 12개 회원국은 보수료가 정해져 있거나 정부기관, 주로 관세 관련 부서가 최저 보수료를 설정하여 감독함[26]

□ 세관당국과 관세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협력 분야는 무역자동화, AEO, 국경통합관리(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단일창구의 이행,

24) WCO, 2016, p. 18.
25) WCO, 2016, p. 19.
26) WCO, 2016, p. 22.

세관 및 정부 관련 기관의 요건 확인, 성실신고 및 양질의 자료 확보, 협정 이행 등이 있음

○ AEO로 인증받은 관세사로서 회원국들이 관세사에 부여하는 혜택을 살펴보면, 개괄신고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 간이통관, 자율심사, 시범사업 및 교육 우선권, 세관에서의 근무 외 시간 업무, 담보 제공 감소 등이 있음

○ 29개 회원국은 AEO를 비롯하여 신뢰받은 무역업자, 법규 준수 프로그램에 관세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

○ 관세 당국과 관세사를 연결하는 관세사회는 62개의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었으며, 27개 회원국에는 관세사를 포함한 전문가 협회가 존재하고, 12개 회원국에는 해당 기관이 없었음

○ 관세사 능력 제고를 위해 47개 회원국에서는 전문대학, 세관훈련학교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48개 회원국에서는 관세사회가, 32개 회원국에서는 관세당국이 관세사회 또는 민간 기구와 협력하여 관세사의 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었음

□ 기타 특정 회원국에서는 관세사에 대해 업무적 투명성을 높이고자 인증라벨(quality label)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었으나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27)]

○ 라벨이 높은 관세사들의 경우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받았는데, 수입자들이 의도적으로 라벨이 낮은 관세사를 선호하여 규정을 회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 본 보고서에서는 회원국의 응답에 기초하여 관세사 면허 및 규제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총 7개의 항목을 제시하였음

○ 7개의 항목은 관세사의 선택적 사용, 면허 및 규제 틀의 주요한 요소, 면허기준, 행정에 관한 책임, 관세사 직무 범위 및 제한, 책임과 의무, 제재 및 벌칙임

---

27) WCO, 2016, p. 29.

〈표 Ⅱ-1〉 관세사 면허 관련 모델체크리스트

구성요소	
1. 관세사의 선택적 사용	- 관세사의 직업윤리
- 법인-업체	- 관세사의 보수
- 자연인-개인	**5. 관세사 직무의 범위 및 제한**
2. 면허/규제 틀의 주요 요소들	- 반출 및 통관과 관련된 서류준비
- 면허기준	- 세관에 정보신고 및 제출, 신고서 제출
- 검증 절차-시험(구술 및/또는 필기)	- 물품의 회계 및 반입
- 관세사 직무의 범위 및 제한	- 정부 대리기관과의 접촉(면허, 증명, 허가 등)
- 관세사의 책임 및 의무	- 관세 및 제세금 납부
- 재평가/심사	- 환급 및 조정
- 제재/벌칙	- 사후 통관심사
- 면허 유효기간	- 규제 요건 만족을 위한 조언 및 컨설팅
- 지리적 제한(국가, 지역)	- 분쟁해결의 대리
- 능력 배양 및 교육	- 기타 무역업자와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내용 등
3. 면허기준	**6. 관세사의 책임 및 의무**
- 관세 및 관련 법규와 지식	-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및 영업윤리의 유지
- 무역 관련 운송 및 금융문제 지식	-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후 업무 수행
- 법규 준수 기록	- 법규 준수 요건에 대해 고객에 조언
- 재정 및 지급능력	- 고객 과거경력 증명
- 최소 교육자격	- 신고정보 및 신고서 정확성에 대해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
- 최소 업무경험	- 화주 대신 관세 및 제세금의 납부책임
- 최소 시간 실무수습	- 세관심사 및 조사를 위한 기록의 유지 보관
- 전자전송능력	**7. 제재 및 벌칙**
- 재정보장-보증채권/증권 예치	- 행정적인 권고 및 경고
- 자국 내 법인 설립, 시민권, 및/또는 영주권	- 업무의 정지
4. 관세행정의 책임	- 벌금
- 규제 및 면허 당국	- 면허취소
- 관세사 시험의 구성관리	- 기소

자료: WCO, 2016, pp. 40~41.

라. IFCBA 관세사 자격에 대한 모범관행 모델

□ 1980년대 말 관세사 제도를 사용해 온 국가들이 국제관세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Customs Brokers Association, 이하 IFCBA)을 설립하였으며 관세사를 대표하여 WTO와 WCO에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28)]

□ 2009년 IFCBA는 3년에 걸쳐 전 세계의 관세사회 및 설문에 기반한 연구에 따라 관세사 제도에 대한 모범관행모델((Best Practice Model for the Licensing of customs brokers)을 제시하였으며 WTO의 관세사 사용(Use of Customs Broker)에 반영되었음[29)]

○ 2007년 IFCBA는 WTO 및 WCO와 같은 국제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조화로운 무역관행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회원국 간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서 관세사 제도 또한 모범적인 관행의 필요성을 인지함

□ 관세사 자격 모범관행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30)]

○ IFCBA 회원국이 관세사 자격제도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함

○ 관세사 사용에 대한 WTO 이니셔티브에 대응하여 WCO 및 WTO에 제출할 자격제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세관당국과 관련된 기관에 추천할 관세사 자격제도에 대한 모범관행을 마련하고자 함

---

28) 김중근, 「관세사 제도 모범관행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관세학회, 2017. 11., p. 34.

29) IFCBA, *Best Practice Model for the Licensing of Customs Brokers*, 2009, https://ifcba.org/sites/default/files/ctd_files/BestPracticesModel_LicensingCustomsBrokersENGLISH.pdf, 검색일자: 2020. 5. 26.

30) IFCBA, *Best Practice Model for the Licensing of Customs Brokers*, 2009. 5., p. 1.

□ 관세사 자격에 대한 모범관행 모델은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관행의 범위(Scope of Practice), 통관업에 대한 진입 규정(Regulation of Entry to Practice Customs Brokerage), 관세사회의 역할(Role of the Customs Brokers Association), 통관업에 대한 관행 규정(Regulation of the Practice Customs Brokerage)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31]

□ 일반원칙에 따르면 관세사, 업체(개인 및 합동사무소, 법인)에 대한 통관업 면허에 대한 규정의 입법은 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32]

□ IFCBA가 권고하고 있는 관세사의 관행범위는 다음과 같음[33]

○ 경제적 운영자(Economic operators)는 세관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관세사를 제3자로서만 사용 가능함

○ 경제적 운영자가 세관과 업무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경우 관세사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

○ 면허가 있는 관세사의 경우 직접적으로 혹은 직무보조자가 물품 반출 및 회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감독함

○ 관세사는 관세를 비롯한 제세금 납부에 대해 고객의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음

□ 통관업에 대한 관행 규정의 경우 개인 또는 최소 한 명의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혹은 법인은 최소 한 명의 임원(officer)이 관세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관세사가 통관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34]

○ 시민권을 보유하거나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함

○ 법에 따라 성년자일 것

---

31) IFCBA, 2009, pp. 1~2.
32) IFCBA, 2009, p. 1.
33) IFCBA, 2009, p. 1.
34) IFCBA, 2009, p. 2.

○ 최소 3년에서 5년의 통관 관련 경험이 필요하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어야 함
○ 관련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해야 함
○ 신용 확인을 통과해야 함
○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함
○ 관세사로 운영하는 통관업체의 경우 재정적인 안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함(과거 및 현재 재정입증 서류)
○ 경제적 운영자를 대신해서 관세 등을 지급할 시 관세사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보증예치금, 재정보증을 예치해야 함

□ 관세사회는 관세사 관련 시험의 내용을 구성하거나 시험과 관련된 교육훈련 과정을 준비 및 제공해야 함[35]

□ 통관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했을 시 다음과 같은 모범관행을 적용해야 함[36]
○ 관세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해당 국가 기준에 따른 전문 직업에 대한 관행 기준을 설정해야 함
○ 지속적으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통관업과 관련된 지식 및 숙련도를 높여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관세사회 교육과정, 세미나 및 업체 교육훈련, 비공식적 전문 직업 교육, 순회교육 등이 모두 포함됨
○ 관세사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함
○ 관세사는 높은 법규 준수도를 갖추어야 함
○ 사이버교육 기회 및 통관업 교육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관세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 됨

35) IFCBA, 2009, p. 2.
36) IFCBA, 2009, p. 2.

□ IFCBA는 이러한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전 세계 관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며 일관된 관세사 자격제도를 설립할 것을 권고함[37]

마. 기타 관련 연구

□ IFCBA와 Ari-Pekka Hameri 외 3인이 실시한 공동연구는 IFCBA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 공급망에서 관세사의 영업환경, 업무, 미래 상황 변동에 따른 역할 변동 등에 대해 조사한 최초의 관세사 제도 관련 연구임[38]

□ 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법규 미준수 비용과 통관 리드타임의 변화에 따라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세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 공급망에서 관세사의 부가가치와 강점은 다음과 같음[39]

○ 국제 공급망에서 관세사의 부가가치는 법규 준수 및 보안지원, 무역 및 규정 관련 지식, 국제 공급망의 기타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중요하지 않은 행위 감소, 공공과 개인의 협력 관리 및 조정 등이 있음

○ 국제 공급망에서 관세사의 강점은 글로벌한 네트워크 또는 다양한 장소에서의 물리적 참여 가능, 전문적인 경험, 정보기술의 사용, 고객을 위한 유연한 서비스 제공, 재정적 보증 등이 있음

□ 세관 절차에 정보통신 기술을 조합한 모범사례로 세관행정 홈페이지 구축, 간소화된 세관 절차, 세관행정의 전자플랫폼, 통관물품 소재지와 데이터 제출 소재지 분리, 싱글윈도우의 5가지를 제시하였음[40]

---

37) IFCBA, 2009, p. 2.
38) Ari-Pekka HAMERI, Philippe WIESER, Juha HINTSA and Ximena GUTIERREZ, "New Roles For Customs Brokers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portation Logistics*, Singapore, 27~29 July 2005, p. 2.
39) Ari-Pekka HAMERI, et al., 2005, p. 5.
40) Ari-Pekka HAMERI, et al., 2005, p. 6.

□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과정에서 관세사의 업무를 전통적 업무, 그리고 비전통적 업무인 물류업무, 컨설팅업무, 중개업무, 기타 업무로 분류하고 있음[41)]

○ 전통적 업무에는 품목 분류, 수출법규 준수, 수입법규 준수, 무역서류, 총비용 산출, 제세금 환급, 고객을 대신한 기록의 보관, 법규 준수 감사, 관리보고가 있음

○ 물류업무에는 창고관리 및 유통, 국제운송 주선, 반품물류 관리가 있음

○ 컨설팅업무에는 무역컨설팅,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신규 시장 진출 컨설팅, 법적 서비스가 있음

○ 중개 업무에는 금융상품, 보험상품, 기타 중개업무가 있음

○ 검사는 물품가액 평가 및 물품검사, 그리고 기타 업무로 무역자동화 서비스와 공급망 안전관리를 선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관세사 업무의 새로운 기회 분야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다섯 가지 기회 분야는 ① 통합물류로 서비스 확장 ②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ICT 기술 활용 ③ 모든 통관 관련 행정업무의 아웃소싱 관리 ④ 잠재적 교역량 증가에 따른 영업능력 조정 ⑤ 복잡한 세관 절차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42)]임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세사의 전통적 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되지만 비전통적인 업무 중 국제운송 주선, 무역컨설팅, 무역자동화 업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커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비전통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음[43)]

- 다른 국제 무역 프로세스 단계를 포괄하도록 서비스를 확장하여 물류 통합 업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음
- 자동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생성 또는 현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함

41) Ari-Pekka HAMERI, et al., 2005, p. 7.
42) Ari-Pekka HAMERI, et al., 2005, p. 13.
43) Ari-Pekka HAMERI, et al., 2005, p. 13.

- 상품이 국경을 넘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에 집중하되, 현재 관세 관련 지식을 무역 관련 정보로 보완하도록 함

2. 국제물류운송인 관련 국제적인 기준 및 모범관행

가. FIATA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한 모범관행 연구

□ 복합운송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운송에서 복합운송을 둘러싼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분쟁에 대해 국제물류운송인(forwarder, 이하 국제물류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법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나 현재 통일된 규범은 없음

○ 복합운송을 규율하는 규범 역시 통일되지 못하고 운송방식별로 개별 법규 또는 개별 협약을 통하여만 유지되어 왔으며 국제적으로는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된 규범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 1980년에 UN 복합운송조약이 제정되었으나 발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및 FIATA B/L 표준약관만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UN 복합운송조약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물류운송인이란 자기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함

○ 그러나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자는 국제물류운송업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운송업체의 자격이나 요건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 국가의 입법정책, 수송산업 환경, 복합운송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름

□ 다만 이론적으로 국제물류운송인을 계약운송인형과 실제운송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은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 형태로, 실제운송인에게는 하주의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 등을 수행함

- 해상운송주선인(Ocean Freight Forwarder), 항공운송주선인(Air Freight Forwarder), 통관업자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보통 계약운송인형을 대표적인 국제물류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이라 함

○ 실제운송인형이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선박, 트럭, 항공기 등)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함

○ 이 유형으로는 선박회사, 철도회사, 트럭회사 및 항공사 등을 들 수 있으며 복합운송 구간 중 해상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선박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실제운송인형이라 할 수 있음

□ 실무상으로는 국제물류운송인(Freight Forwarder)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각 나라에서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용어 또한 없음

□ 따라서 통관업 관련자인 관세사와의 직무 비교를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복합운송 약관을 제정한 FIATA의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한 모범관행 연구(*Model Rules for Forwarder*)』(2019)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음

○ 국제물류운송인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이하 FIATA)은 국제화물 운송업계의 확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26년 비엔나(Vienna)에 설립되었으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및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등과 협의체를 두고 있음

□ 국제물류운송서비스(freight forwarding service)에 대해 국제물류운송인 모범관행 연구에서는 물품의 운반, 혼합, 보관, 처리, 포장뿐 아니라 세관 및 비용 등에 대한 자문에 한정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의 통관, 보험 및 납부, 관련 문서의 조달 등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44]

□ 국제물류운송인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 고객이 물품의 손실 또는 파손 등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45]

○ 국제물류운송인은 국제무역화물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정확한 장소 및 시간에 온전한 상태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이동시켜야 함

- 이러한 국제물류운송인의 업무는 운송설계와 운송계약 체결, 혼재, 물품의 포장 및 보관, 통관 및 보험수배, 운임 및 기타 비용의 대납, 수출화물의 검사, 수송의 감시자와 배송인의 역할 등이 있음

□ FIATA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한 모범관행 연구에서는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한 의무를 세부적으로 운송인(carrier)으로서의 의무, 기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 당사자(principal)로서의 의무로 분류하였음[46]

○ 국제물류운송인은 자가 운송으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운송문서를 발급하거나 계약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데 만약 고객이 국제물류운송인이 아닌 업체로부터 발급된 운송문서를 받았거나, 적합한 시간 내에 국제물류운송인에게 업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물품의 이동뿐 아닌 기타 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서비스가 국제물류운송인의 시설 또는 고용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혹은 국제물류운송인이 주체자로서 책임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됨

○ 당사자로서 국제물류운송인은 기타 서비스 및 계약된 운송과 관련한 제3자의 행위, 부작위에 대해 법에서 운송수단 또는 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 권리

44) FIATA, *Model Rules for Forwarder*, 2019. 10., p. 2.
45) FIATA, 2019, p. 4.
46) FIATA, 2019, p. 4.

등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됨

○ 그 밖에 계약상 국제물류운송인에게 신고되지 않은 위험물품, 귀중품, 서면계약상 동의하지 않은 물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 비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의무가 없음

□ 국제물류운송인의 책임 예외에 대해 제3자인 운송인(carrier), 보세창고업자, 항만관리자 등에 의한 손실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물품에 내재된 위험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47)]

○ FIATA의 국제물류운송인의 모범관행 연구는 1996년 10월 이후 2019년 10월에 개정되었으며 특히 국제물류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개정이 있었음[48)]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제물류운송인은 내재된 위험을 가진 물품의 손실과 손해, 고객 및 고객의 대리업체 또는 고객이 고용한 그 어떤 제3자의 행위, 부작위 그리고 부적절한 포장 또는 물품 표시로 인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47) FIATA, 2019, p. 4.
48) FIATA, 2019, p. 10.

Ⅲ. 우리나라의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

1. 관세사의 진입 요건

□ 「관세법」상 통관업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수출·수입·반송에 관한 절차 등 이에 부수되는 절차를 대리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통관업 담당자에 대한 제도는 관세사(關稅士)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음[49]

□ 관세사는 관세사무소, 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세사가 아닌 운송 등을 업으로 하는 물류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사를 고용하여 통관업무를 할 수 있는 통관취급법인 제도가 존재함[50]

가. 자격의 정의

□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관세와 통관 관련 전문자격인임[51]

□ 현재의 관세사 제도는 1996년 관세사의 통관서비스의 기능을 높이고 전문자격인으로서 관세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법」의 일부로 되어 있던 관세사 제

---

49) 제21차 「관세법」 개정(1975년 12월 12일)에 통관업의 정의가 신설되었으나, 제23차 「관세법」 개정(1978년 12월 5일)으로 인하여 통관업의 용어는 삭제되고 '세번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의 계산, 통관 절차의 이행 등' 관세사의 구체적인 직무가 규정됨

50) 「관세사법」 제19조

51) 「관세사법」 제1조의2

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시행되었음

○ 우리나라의 최초의 관세사 제도는 1949년 「관세법」 제정과 함께 세관화물취급인 제도를 통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1967년 통관업자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됨

나. 자격 선발 방식 및 응시

□ 통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관세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52]

○ 관세사 시험의 최종합격 발표일자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53]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이므로 통관업을 영위할 수 없음[54]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함[55]

다. 등록 및 개시

□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종료한

---

52) 「관세사법」 제6조
53) 「관세사법」 제6조의2
54) 「관세사법」 제5조
55) 「관세사법」 제6조의3

후에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는 관세사회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56]

○ 등록기간 5년으로 하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함

○ 관세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함[57]

○ 관세사회장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세사가 업무를 개시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법인(통관취급법인 포함)이 통관업무 수행에 적합한 법인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함[58]

□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또는 폐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59]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해야 함[60]

○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내 재등록이 불가하며 관세사가 다시 개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3월 이내 다시 개업한 때에는 재등록하지 아니함[61]

□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62]

□ 관세사는 업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해야 함[63]

○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

56) 「관세사법」 제7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6조
57) 「관세사법」 제7조의2
58) 「관세사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59) 「관세사법」 제8조
60)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7조
61) 「관세사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62) 「관세사법」 제10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8조
63) 「관세사법」 제9조 제1항

이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64]

○ 관세사는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

○ 관세사사무소는 타 관세사사무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65]

□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66]

○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업무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짐[67]

○ 합동사무소의 소속 관세사가 탈퇴하여 구성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봄[68]

□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며,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함[69]

○ 관세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관세사회장에게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70]

---

64)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9조
65) 「관세사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규정」 제3조
66) 「관세사법」 제9조 제2항
67)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9조; 제30조
68) 「합동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69) 「관세사법」 제17조; 제17조의3; 제17조의4
70)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2조

라. 기타제도(통관취급법인)

□ 통관취급법인의 경우 물류기업 및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통관업을 할 수 있음[71]

○ 통관취급법인의 법률규정은 「관세사법」에 있으나 사실상 「상법」상 요건을 갖춘 일반 물류기업에 대하여 통관업무의 일부를 허용한 법인의 형태이므로, 우리나라 관세사 제도의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통관취급법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 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운송한 건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음[72]

□ 통관취급법인은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하며, 통관취급법인의 대표는 통관업무와 관련된 인사배치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소속 관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73]

□ 통관취급법인의 경우 물류기업이 운송위탁물품에 대하여만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장에게 등록 시 운송시설과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

71) 「관세사법」 제19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9조

72) 통관은 관세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운송, 보관, 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위탁받은 물품에 한하여 통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73)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6조

2. 관세사의 서비스 제공 요건

가. 직무범위

□ 관세사는 무역업자의 의뢰를 받아 각종 신고대리 및 세관 절차 이행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관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업무를 제공함[74]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상 관세 세액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 작성
○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 이행
○ 「관세법」상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제도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또는 확인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에 관한 조사 등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 원칙적으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할 수 없음[75]

---

74) 「관세사법」 제2조
75) 「관세사법」 제3조

○ 관세사가 아닌 자는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관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됨

나. 의무

□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할 수 없음[76]

□ 관세사는 통관업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에게 유치활동 또는 업무유치에 대한 대가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통관업무 유치를 조건으로 특정인을 직무보조자로 고용할 수 없음[77]

○ 관세사는 통관업무를 유치·유인하기 위하여 하역·운송·보관 또는 이를 주선하는 자, 중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거나 통상보수료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개·알선의 대가로 이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제의해서는 안됨[78]

□ 관세사는 「관세사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79]

○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없음

□ 관세사는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해야 함[80]

---

76) 「관세사법」 제12조
77) 「관세사 윤리강령 세부실천 규정」 제5조
78) 「관세사 윤리강령 세부실천 규정」 제9조
79) 「관세사법」 제13조

○ 관세사는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81]

○ 관세사는 관세사회장이 정한 복무규정 및 관세사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82]

○ 관세사는 통관업무 등을 위하여 세관관서를 출입할 때에는 관세사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하며 관세사는 관세사증이 손상 및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83]

□ 관세사는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해당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84]

○ 관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청구해야 하며, 화주 등에 대하여 보수 이외의 금품을 청구 또는 수수할 수 없음[85]

□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업무실적 내역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 액수, 수임 건수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86]

○ 관세사는 매월 말 현재 통관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관세사 지부장을 경유하여 관세사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함[87]

□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할 수 없음[88]

---

80) 「관세사법」 제21조
81) 「관세사법」 제15조의2
82)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조
83) 「관세사 증표 교부 관리규정」 제4조
84) 「관세사법」 제13조의2
85)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 제3조
86) 「관세사법」 제13조의4
87) 「관세사회 회칙」 제11조; 「관세사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88) 「관세사법」 제13조의5

□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함[89]

□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음[90]

○ 관세사는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 업무,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 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증빙서류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해야 함[91]

○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당해 연도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음[92]

□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관세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관세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관세사가 될 수 없음

□ 관세사는 자신이 신고한 수출입건에 대한 심사청구 등이 제기되어 관세심사위원회의 서면 또는 구두설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 등의 수임 여부와 관계없

89) 「관세사법」 제14조
90) 「관세사법」 제15조
91) 「관세사법」 제16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2조
9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관에 관한 경위 등을 설명해야 함[93]

□ 관세사는 자신의 명의로 수출입·반송신고 및 환급 신청한 서류를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함

○ 관세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관 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관세사는 경리장부, 통관취급대장, 보수청구서 철 및 영수증 철을 항상 기록 및 비치해야 하고 2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관세사가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겸업하는 영업과 독립하여 기록 비치해야 함[94]

다. 규제

□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를 두고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관세사 등록 거부 및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95]

□ 관세사 또는 관세사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 관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등 「관세사회 회칙」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할 수 없음[96]

○ 대표적인 금지사항으로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 관세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보수료로 타 관세사를 배제시키는 행위가 있음[97]

---

93)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조
94)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 제4조
95) 「관세사법」 제6조의4;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3
96) 「관세사회 회칙」 제13조
97)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 제3조의2

□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관세사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또는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세사의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해야 함[98]

○ 징계조치할 때에는 관세사회의 관세사 윤리규정 및 직무보조자 징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함[99]

□ 관세사는 복합운송주선업체로부터 통관업무를 소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함[100]

○ 복합운송주선업체로부터 통관업무를 소개받은 경우 관세사는 화주를 확인한 후 당해 화주에게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 수출입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출입신고를 해야 함

○ 통관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화주에게 교부해야 함

○ 통관보수는 반드시 관세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입금해야 함

○ 통관업무를 소개한 복합운송주선업체에 그 소개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관세사는 의뢰받은 다음의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위임인에게 청구해야 하나[101] 보수료의 최저요율 및 최고요율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보수 산정 시 고려되는 내용은 수입통관, 수출통관, 환급, 담보 및 보세구역, 사후심사 및 세관조사, 행정쟁송 등에 대한 대행 및 FTA 관련 업무 및 컨설팅, 기타 부대업무 등이 있음

---

98)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6조
99)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 제16조
100)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업무 단순주선 시의 업무처리 규정」 제2조
101) 「관세사 보수료 청구항목에 관한 규정」 제2조

라. 교육

□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6월의 범위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도를 통하여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실무수습은 한국관세사회의 집합교육(기본교육)과 지도 관세사에 의한 교육(현장교육)으로 구분하며, 현장교육은 기본교육 이수 후 실시함[102]

○ 기본교육과 현장교육의 기간은 관세사회 회장이 정하며, 기본교육은 월 80시간 이상, 현장교육은 주 20시간 이상으로 함[103]

□ 등록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아야 함[104]

○ 의무연수교육의 기산일은 1월 1일로 하며, 연수교육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의무연수교육 이수시간은 직업윤리 2시간을 포함하여 1년에 8시간 이상으로 함[105]

○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세사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에게 징계 건의해야 함[106]

3. 국제물류주선인의 진입 요건

가. 자격의 정의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

---

102) 「관세사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
103) 「관세사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3조
104)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 제16조
105) 「관세사 연수교육 운영규정」 제6조
106) 「관세사 연수교육 운영규정」 제10조

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함[107]

○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그의 대리인으로서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수입국의 수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품에 관한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등의 일체의 업무를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함

□ 수출입통관 실무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 국제물류운송업자,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포워더, 프레이트 포워더, 복합운송주선인[108] 등은 같은 의미이나 관계 법령 또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국제물류운송주선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운송주선인, 국제운송주선인, 복합운송인 등으로 단어를 혼용하고 있음[109]

○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복합운송주선업도 포함되나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 조항이 없고 관련된 법률용어가 정립되지 않은 채 난립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110]

나. 등록 및 개시

□ 관세사 제도와 달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경우 그 자격을 부여하는 데에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의 자격선발 제한이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국제물류운송주선업을 영위할 수 있음

□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은 우선적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국제물류주

10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08) 국제복합운송이란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 일관된 운임으로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Door to Door의 종합적 물류합리화시스템을 제공하는 자임
109) 이규훈,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6, p. 11.
110) 이제현, 「국제물류주선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017, p. 802.

선업을 등록한 후 「관세법」에 따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로 순서대로 등록해야 하며 각 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과거 허가제였던 국제물류주선업은 1996년 등록제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1999년 시설기준이 폐지됨으로써 등록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세업체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국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음[111)]

□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112)]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함

□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상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변경을 해야 함[113)]

---

111) 최영석, 「일본의 화물이용운송사업과 우리나라의 국제물류주선업 제도」, 『계간 해양수산』, 제3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p. 132.
11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113)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114]

○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함

□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함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115]

□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116]

○ 시·도지사는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해야 함

□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117]

---

11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1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1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함[118]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119]

□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120]

○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함[121]

□ 「물류정책기본법」상 등록된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화물운송주선인으로 등록해야만 수출입화물운송을 수행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수출입화물의 국제물류운송주선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업체는 서울시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마치고 인천세관에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야 함[122]

□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운송수단의 종류·명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해야 함[123]

○ 세관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보세화물운송주선

---

117)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118)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11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120)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1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22) 최영석, 2011, p. 136.
123)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업자부호가 중복되는지 등을 확인함

○ 세관장은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함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124]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125]

□ 「관세법」상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안전관리기준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126]

□ 등록은 갱신할 수 있으며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127]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함[128]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해야 함

---

124) 「관세법」 제231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125) 「관세법」 제222조 제3항
126) 「관세법」 제222조 제5항
127)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128) 「관세법」 제223조;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함

○ 「관세법」상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129)]

○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이어야 함

○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130)]

〈표 Ⅲ-1〉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제도 비교

구분	국제물류주선업	보세화물운송주선업	통관취급법인
근거법	「물류정책기본법」	「관세법」	「관세사법」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기획재정부(관세청)	기획재정부(관세청)
분류	해상 및 항공주선업	해상 및 항공화물 운송주선업	
운영 방식	등록제	등록제	등록제*
관련 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
국제 물류 주선업과의 관계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 해상 및 항공화물(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할세관에 신고	-

주: *는 종합물류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제를 의미
자료: 최영석(2011)을 바탕으로 2020년 기준으로 저자가 업데이트하여 정리

129)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총 8가지의 사유가 있음

130) '혼재화물적하목록'이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함

4. 국제물류주선인의 서비스 제공 요건

가. 직무범위

□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계획, 운송계약체결 및 선복예약, 운송관계서류 작성, 포장·보관업무, 보험수배, 화물추적안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직무범위는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의 각각의 수입(Inbound)과 수출(Outbound)의 처리로 나뉨

□ 수출입업무 단계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는 수출업무 및 수입업무로 분류할 수 있음[131]

○ 수입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운송서류 접수, 적하목록 EDI 신고
- 선박도착 및 화물의 CY[132] 하역, 보세창고 입고
- 관세사에 수입신고 의뢰[133]

○ 수출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관세사에 수출신고 의뢰[134]
- 선복예약 및 선적요청서 접수
- 화물(컨테이너)의 지정 선박(항공기) 선(기)적 및 출발
- House B/L[135] 및 Master B/L[136] 발행 및 운송서류 발송, 적하목록 EDI 신고

131) 황진회·전형진·이언경·최영석·홍수진·양근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pp. 11~17.
132) 'Container yard'의 약자이며,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컨테이너를 보관, 반출입하는 보세구역임
133) 수입자가 관세사 주선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는 관세사를 선정하여 관세사에게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 대행을 의뢰함
134) 수출자가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관세사 주선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나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관세사 주선을 의뢰한 경우에는 관세사를 선정하여 해당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함
135) 'House B/L'이란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함

나. 의무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함[137]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마약 등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함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음[138]

□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함[139]

다. 규제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

136) 'Master B/L'이란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함
137)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138) 「관세법」 제223조의2
139) 「물류정책기본법」 제5조

을 경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140]

□ 세관장은 등록된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사항의 변동 여부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음[141]

○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1년 이내이거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음. 세관장은 업무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한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점검 만료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142]

□ 세관장은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해야 하며 세관장이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세관장은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143]

---

140)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14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142) 「관세법」 제224조
143)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 세관장은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표 Ⅲ-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음[144)]

○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관세채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함

□ 보세운송업자 등이 폐업한 경우, 보세운송업자 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함[145)]

〈표 Ⅲ-2〉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위반내용	관련 조항	제재내용
1.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1차: 업무정지 20일 2차: 업무정지 4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1.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224조	업무정지 해당기간
1.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당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보고, 서류, 장부 등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때	「관세법」 제222조 제3항 및 제4항	1차: 경고처분 2차: 업무정지 5일 3차: 업무정지 10일
1. 등록사항 변동신고 위반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5항	
1.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세관장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주: 1. 본 연구에서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는 「관세법」상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범위이므로 〈표 Ⅲ-2〉를 동일하게 적용받음
2. 1차, 2차, 3차의 적용은 동일한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같이 적용
3. 제재기준의 1차, 2차, 3차 적용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기간으로 산정

자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44)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145) 「관세법」 제224조의2

□ 세관장은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세관장은 등록된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사항의 변동 여부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음[146)]

○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1년 이내이거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음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한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점검 만료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의 경우 정해진 최저보수 또는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정 요율표는 없으며 업종 내 자유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라. 교육

□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의 경우 별도 자격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업무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이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없음

146)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Ⅳ. 주요국의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

1. 미국

□ 185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관세사는 'Custom-house broker' 또는 'express agent'라고 불리며 별도의 통제를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탈세, 불법무역 등을 방지하고자 재무부(Secretary of the Treasury)에서 국가 공인제도로 도입하게 되었음

□ 1984년 「무역관세법(Trade and Tariff Act of 1984)」 제641조의 개정에 따라 관세사에 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었음

○ 관세사에 대한 명칭이 'custom-house broker'에서 'customs broker'로 바뀌었으며, 관세사에 대한 징계 및 징계 절차, 벌금 및 부여 절차 등이 구체화되었음
- 1993년 통관업에 대해 문서나 서식의 작성과 문서, 송장, 청구서 또는 그 일부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

○ 2002년에는 관세사 제도에 대한 업무 권한이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이하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음

가. 관세사의 진입 요건

1) 자격의 정의

□ 미국의 관세사 제도에 대한 내용은 「미국 관세법」(19 USC Chapter 19) 19 U.S.

Code 1641 관세사(Customs Brokers)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규정」(19 CFR Chapter 19) 19 CFR 111 관세사(Customs Brokers)에서 「관세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음

□ 관세사(Customs Broker)는 19 CFR 111.1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통관업(Customs Business, 이하 통관업)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함

○ 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 이하 재무부 장관)이 발급한 유효한 관세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세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관세사로서 통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격뿐 아니라 Customs Form 5291에 따라 법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야 하고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임원이나 직원을 고용할 시에도 법적 위임 절차에 따라야 함[147]

○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이하 위임장)은 2년의 효력을 가지며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Border Protection, 이하 CBP) 혹은 해당 항구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음[148]

○ 위임 관련 서류는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지만 CBP에 위임사실에 대해 통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님[149]

2) 자격의 선발방식 및 응시

□ 19 CFR 111.11의 관세사 기본 응시 자격[150]에서 관세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사 자격은 개인, 합자회사(Partnership), 단체(Association), 법인(Corporation)의 4가지 형태로 취득 가능함

147) 19 CFR Subpart C 141.32
148) 19 CFR Subpart C 141.34
149) 19 CFR Subpart C 141.36
150)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19 CFR § 111.11-Basic requirements for a license,”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111.11, 검색일자: 2020. 7. 28.

○ 합자회사의 경우 한 명 이상의 회원이 관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함
○ 단체 또는 법인은 한 명 이상의 임원(officer)이 관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관세사로서 통관업을 실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 해당 자격을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 양도할 수 없으며, 예를 들어 관세사 자격자가 해당 회사의 단독 소유자인 경우에도 회사가 통관업에 참여하기 위해 관세사 자격을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자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 해당 기업이 관세사 자격을 수령하였을 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 통관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개별 관세사가 보조 서비스를 회사에 아웃소싱 하는 경우 회사는 관세사의 실제 세관 업무에 접근하거나 참여하지 않아야 함
○ 자격을 갖춘 임원이나 합자회사를 120일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관세사 자격이 취소됨

□ 관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 요건은 4가지로 다음과 같음
○ 자격 취득을 위한 4가지 요건은 자격 신청일에 21세 이상으로서 미국의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닐 것, 미국 시민권자일 것, 좋은 도덕성을 갖출 것, 자격 신청일 3년 이전에 관세사 시험(75% 이상 통과)을 합격할 것 등이 있음
○ 재무부 장관은 지원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관세 관련 지식, 관계법, 규칙, 절차, 부기, 회계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판단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세사 자격을 위한 시험은 연 2회 CBP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세 및 관련 법,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 환급, 벌칙 등의 통관 절차, 회계, 기장 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자 함[151]
○ 만 18세 이상[152]의 시민권자로 연방정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151) 19 CFR 111.13
152) 만 18세 이상부터 시험의 응시는 가능하나 자격의 취득은 21세 이상부터 가능함

HTSUS(2019), 「관세법」, CBP Form 7501 작성법, 수입신고 권리지침(Directive 3530-002A), 전자상거래(Automate Commercial Environment) 처리(ACE Entry Summary Business Process)를 참고하여 오픈북, 오픈테스트 형태로 75%의 문제 통과가 합격의 기준임[153]

○ 법인, 단체, 합자회사에 고용된 개인관세사가 퇴사 혹은 법규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될 예정인 경우 CBP는 개인관세사 자격이 있거나 임원으로 활동할 개인 면허의 예비신청자에 대한 특별시험을 허가할 수 있음

□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심사 신청을 통해 CBP 국제무역국국장(Assistant Commissioner,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국제무역국국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관세사가 될 수 있음[154]

○ 지역 항구 세관장이 CBP 지정 조사관, 혹은 담당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한 후 추천서 원본 및 신원조사 보고서를 CBP 본부에 송부하면 CBP가 최종평가를 통해 국제무역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통지함

3) 등록 및 개시

□ 미국은 허가제로서 관세사 자격 취득 후 별도로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 항구세관장에게 허가를 취득해야 함

□ 허가는 지역 허가 및 전국 허가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취득하는 것도 가능함[155]

○ 관세사 허가에 대한 거부 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제

153) CBP, “Customs Broker License Examination - Notification,”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customs-brokers/license-examination-notice-examination, 검색일자: 2020. 6. 11.
154) 19 CFR 111.12-15
155) 19 CFR 111.19

무역국국장에 불복하고 국제무역국장의 거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제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항소할 수 있음[156]

□ 지역 허가는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세사 자격 통지를 받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게 되나 해당 지역 외에서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새롭게 지역 허가를 취득해야 함[157]

○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를 1인 이상 정기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지역의 항구 세관장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됨

○ 해당 항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장 설립에 대해 세관장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통관업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함

○ 단 보다 넓은 지역에서 1인 이상의 관세사가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있고 사업장의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CBP에 입증할 수 있다면 지역 허가에 대한 관세사 고용 요건이 면제됨

○ 국가관세자동화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이나 규정에 따르는 전자적인 정보 제기와 같은 활동을 위해 지역 허가를 받은 관세사는 해당 지역에서 동일하게 허가 받은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채권, 관세, 세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에 대해서는 임명된 관세사가 책임지도록 함

□ 전국 허가는 CBP 국제무역국의 허가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통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또한 전국 허가를 취득해야 함

○ 허가 받은 지역 내 영업장(facility)에 관세사가 고용인을 통해 수입신고 및 세관과의 서류제출 업무를 제외한 통관업을 대리하는 경우, 전국 허가로만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156) 19 CFR 111.19(g)
157) 19 CFR 111.19(b)-(d)

○ 전자신고 및 전자환급의 업무는 전국 허가만으로도 수행 가능함
○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구두, 서면, 전자적으로 수입자의 대리 권한이 증명되었다면 전국 허가만으로 수입신고를 제외한 대리 업무를 수행 가능함

나. 관세사의 서비스 제공 요건

1) 직무범위

□ 관세사의 직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관세사가 통관업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바, 19 CFR 111.1에서 통관업(Customs Business, 이하 통관업)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세사의 직무로 간주함

□ 관세사가 영위하는 통관업에는 CBP로부터의 수입 허가, 상품 분류 및 평가, 수입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제세금, CBP가 평가 또는 하자를 이유로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기타 비용 납부, 관세 및 제세금, 기타 비용의 환급 등이 있음[158]
○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형식의 문서 준비 및 준비와 관련된 활동 및 기타 통관업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CBP에 제출할 문서 준비, 전자거래문서, 송장, 법안, 문서의 전자전송 등이 있음
○ 그러나 통관업에는 CBP로 전달(전송)하기 위해 수신된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 법규 준수 활동도 또한 포함되지 않음

□ 세부적인 통관업에 대한 기준은 미국 사전심사(Customs Ruling)의 국제물류운송인과 고객, 고객과 관세사, 국제물류운송인과 관세사 간 위임장에 따른 책임 범위에 대한 심사요청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음[159]

158) 19 CFR 111.1
159) Customs Mobile, “Ruling-HQ H258556,” https://www.customsmobile.com/rulings/docview?doc_id=HQ H258556&highlight=HQ%20H258556, 검색일자: 2020. 7. 27.

○ 국제물류운송인이 수입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관세 납부를 위해 CBP에 송금하는 것이 통관업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화물 운송업자는 계산을 위한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관세액의 결정이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국제물류운송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결정하였음

○ 수입자가 관세사에게 발행한 위임장을 바탕으로 관세사가 국제물류운송인에게 관세 청구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입자와 화물 운송업자 사이의 위임장이 없으면 정보보호 의무에 따라 관세사는 정보전송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과금 분쟁 처리를 위한 선하증권, 상업송장, 의뢰인 청구서 등의 검토는 통관업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물류운송인이 처리할 수 있지만, 수입신고, 간이신고 등의 청구 서류 검토는 통관업에 해당하므로 관세사의 책임 범위라고 결정하였음

○ NAFTA 물품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대한 양식 제공, 양식 작성에 대한 조언, 수출문서에 대한 조언, 고객의 채권구입에 대한 조언, 채권신청서 작성에 협조,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외국의 세관 요구사항에 대한 고객과의 상담 등은 모두 통관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면허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의 업무라고 결정하였음

2) 의무[160]

□ 관세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19 CFR Subpart C 관세사의 의무와 책임(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ustoms Brokers)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사는 중개자로서 참여하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특히 세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서신 및 기타 기록의 사본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가짐[161]

○ 기록은 보세창고 반출일 또는 물품의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

160) 19 CFR Subpart C
161) 19 CFR 111.21-19 CFR 111.27

며 보관기간 동안 CBP가 요청할 시 기록을 제출해야 함

○ 고객, 세관장, 국제무역위원회, 감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 항만장, 법원 등의 요청을 제외하고 고객과 관련된 기록은 비밀로 유지해야 함

○ 관세사는 거래와 관련된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접근, 은폐, 제거 또는 파기를 할 수 없으며 국제무역국의 정기 심사관은 기록 보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사함

□ 개인, 합자회사, 단체, 법인은 통관업을 개시하기 위해 허가받은 항구 세관장에게 직원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직원이 고용된 날로부터 10일, 고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함[162)]

□ 관세사는 고객으로부터 지불받은 관세, 세금 또는 기타 부채를 납부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지불기한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제세금에 대해서는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사업장 주소, 조직, 이름 또는 사업장 위치 변경, 중개업 해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즉시 세관장에게 통지해야 함[163)]

○ 관세사의 이름 변경, 지역 허가를 취득한 영역에서 법인 단위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시 국제무역국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본사의 승인을 취득해야 함

□ 자격 개시 후 매 3년마다 모든 관세사는 관세사 자격을 득한 항구의 세관장에게 상태보고서(status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CBP로 제출되거나 다른 세관으로 제출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164)]

○ 보고서를 자격 개시 3년째 3월 1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정지 또는

162) 19 CFR 111.28
163) 19 CFR 111.30(a)-(c)
164) 19 CFR 111.30(d)

철회될 수 있으며, CBP가 한 달 이내로 자격 정지에 대해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후 60일 내에도 상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취소됨

○ 실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가(Actively engage)에 대한 기준은 개인 또는 합동 관세사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통관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법인에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며 다른 관세사의 대리, 통관업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 관세사는 개인 및 법인 자격에 대해 2건의 상태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미국 정부기관의 근무자 또는 임원이었던 관세사는 국토안보부를 대상으로 공직 기간 동안 입수했던 정보 혹은 사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고객을 대리할 수 없음[165]

○ 또한 이를 인지한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배분하거나 조력(personal consideration)을 주고받을 수 없음

□ 관세사는 통관 관련 문서, 진술서, 기타 문서에서 오류가 있다고 인지하였다면 해당 문서를 제기, 입수, 전달할 수 없음[166]

○ 관세사는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입수 또는 입수하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167] 국토안보부 직원에 대한 협박, 부당고발, 혜택 약속, 유인 및 뇌물 공여는 금지되어 있음[168]

□ 변호사와의 직·간접적 거래에 관련된 금전거래는 할 수 없으며 고객의 위임 없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 어음, 고객 지시로 발행된 어음에 대해 배서할 수 없음[169]

---

165) 19 CFR 111.31
166) 19 CFR 111.32
167) 19 CFR 111.33
168) 19 CFR 111.34
169) 19 CFR 111.35

□ 수입자를 제외하고 비면허자를 고용하여 통관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으나 다음의 조건에 따라 관세사는 국제물류운송인에 중개업을 위탁한 것에 대해 보상할 수 있음[170]

○ 수입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국제물류운송인(freight forwarder) 또는 관세사로부터 세관거래(Customs transaction) 처리를 위해 국제물류운송인이 선정한 관세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는 경우

○ 관세사가 수입자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다음을 직접적으로 전송한 경우

- 수수료가 국제물류운송인에 의해 또는 국제물류운송인을 통해 징수될 경우 중개 수수료의 실제 사본, 중개 수수료가 관세사에 의해 또는 관세사를 통해 징수될 경우 국제물류운송인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수수료의 명세서 및 항목별 목록

○ 관세사와 국제물류운송인 간의 보상 합의의 일부도, 계약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수입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관세사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

○ 자격이 없는 자(자격 정지자 포함)가 타인의 관세사 자격으로 통관업 홍보, 판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171] 관세사는 고용되기 위해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172]

○ 관세사가 실제 수입자가 아닌 비면허자에 의해 통관업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되었을 시, 실제 수입자에게 서비스 제공 청구서 사본이나 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송부해야 함

□ 관세사는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고객에게 통관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문서상 오류를 범하거나 누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즉시 불이행,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통지해야 함[173]

---

170) 19 CFR 111.36
171) 19 CFR 111.37
172) 19 CFR 111.38
173) 19 CFR 111.39

○ 관세, 세금 또는 그 밖의 채무나 의무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계획을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고의로 제안할 수 없음
○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관세사는 대리하여 항소할 수 없음[174]
○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관세사는 어음, 수표, 보증에 배서 또는 승인할 수 없음[175]

□ 권리 침해로 인하여 관세사의 자격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거나 악명 높은 자를 대신하여 거래를 하거나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176]

□ 그 밖에 19 U.S. Code 1641(i)이 도입되어 수입자 식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거주 수입자를 포함한 수입자의 신원을 관세사가 확인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에 의한 세부 절차 규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최소 필요조건은 세 가지로 ① 비거주 수입자를 포함한 수입자가 신원 확인을 위해 관세사가 수집해야 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② 관세사는 수입자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③ 관세사가 수입자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의 기록을 유지해야 함
○ 본 규정에 따라 관세사가 제대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규정 위반 각각 행위에 따라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격의 철회, 정지 등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
○ 비거주 수입자는 미국 시민이 아닌 개인 또는 합법적으로 미국 거주가 인정된 외국인, 미국 관세 지역 내에서 관할 법에 따라 조직되지 않은 합작회사, 법인 또는 기타 상업 기관을 의미함

---

174) 19 CFR 111.40
175) 19 CFR 111.40
176) 19 CFR 111.42

3) 규제

□ 관세사의 징계에는 자격 취소, 정지, 철회, 벌금형이 있고[177] CBP 국제무역국 국장이 항구 세관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고 있으며 관세사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자격이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178]

○ 항구 세관장은 관세사의 면허나 허가 징계와 관련하여 예비 절차의 적용이 시작될 시 통지하며, 징계 절차는 예비 절차를 비롯한 청문회, 본 심의의 단계로 진행됨[179]

○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그의 피지명자(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his designee)가 혐의 진술서에 있는 하나 이상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집행정지, 취소 또는 벌금형 조치를 취할 수 있음[180]

□ 관세사 자격 혹은 영업 정지 또는 철회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세사가 아닌 경우 사유별로 1만달러, 모든 위반 및 거래에 대해서 3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181]

○ 관세사 자격 없는 자가 통관업무를 고의로 수행했을 시 거래 건당 1만달러의 벌금과 기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병과하여 처벌함

○ 자격 또는 영업정지, 철회 사유는 다음과 같음[182]

- 자격 또는 허가 신청서 내용, 세관의 보고 내용 등의 허위기재, 신고사항 누락
- 상품 수출 수입, 관세 거래 행위, 절도, 도둑, 강탈, 위조, 불법적 은폐, 불법적 환전, 자금횡령과 관련한 중죄 및 경범죄를 범한 경우
- 관세 관련 법규 위반, 관세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조언, 설득, 교사 등
- CBP 서면 승인 없이 영업 시 중죄를 범한 자를 고용

177) 19 CFR 111.50
178) 19 CFR 111.52
179) 19 CFR 111.59-74
180) 19 CFR 111.74
181) 19 CFR § 111.91
182) 19 CFR § 111.53

- 관세사가 의도를 가지고 고객을 기만, 오도, 위협

□ 법인, 단체, 조합이 120일 동안 적어도 1인 이상의 관세사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관세사 자격은 철회되며, 관세사 허가를 받은 자가 180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적어도 1인 이상의 관세사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자격은 철회됨

4) 교육

□ 미국의 경우 「관세법」 및 연방 규정 내에는 보수 교육이나 의무교육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며 NCBFAA(National Customs Brokers & Forwarders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NCBFAA)에서 진행하는 일부 교육은 의무교육의 형태는 아니나 자격 인증이 발행되고 있음[183)]

○ NCBFAA에서는 국제 무역, 공급망 관리, 글로벌 물류, 세관 중개, 수출 거래, 운송 등의 교육과 관련하여 공인세관전문가(Certified Customs Specialist), 마스터세관전문가(Master Customs Specialist), 공인수출전문가(Certified Export Specialist), 마스터 수출전문가((Master Export Specialist)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일부 자격 중 공인세관전문가의 경우 특히 캐나다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미국과 캐나다 두 곳의 인증서가 함께 발행됨

다. 국제물류운송인의 진입 요건

1) 자격의 정의

183) NCBFAA, “Members Resources-Educational Institute,” https://www.ncbfaa.org/Scripts/4Disapi.dll/4DCGI/cms/review.html?Action=CMS_Document&DocID=8581&MenuKey=education, 검색일자: 2020. 6. 10.

□ 「관세법」상에서는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해 미국, 그 영토 또는 소유권, 그리고 외국 사이의 외국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물품을 발송하고 그러한 발송에 대한 형식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184)]

○ 미국의 「관세사법」에서는 관세사와 비자격자의 관계에 대한 조항(19 CFR 111.36)에서 운송자(freight forwarder)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상에서도 국제물류운송인에 대해 정의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 미국의 국제물류운송인은 내륙운송주선인(Domestic Freight Forwarder, 이하 DFF), 해상운송주선인(Ocean Freight Forwarder, 이하 OFF), 무선박운송인(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NVOCC)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있음

□ 내륙운송주선인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관할의 「미국 주간운송관계법(United States Code Title 49: Transportation, Subtitle Ⅳ: Interstate Transportation)」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국제물류주선 업무와는 차이가 있음[185)]

○ 「주간운송관계법」상 국제물류운송업은 파이프라인, 철도, 자동차, 수송 운송인이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화물을 집하, 혼재, 분배, 배송하고, 화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 화물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 운송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미국 주간(Interstate)에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자임[186)]

○ 따라서 법적 정의에 따라 「미국 주간운송관계법」상에서 규정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입화물을 다루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과는 다른 성격의 업종임을 알 수 있음

□ 내륙운송주선업을 제외한 국제물류운송업에 대해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f 1998)」에서 이를 담당하는 자를 해상운송중개인(Ocean

184) 19 CFR 111.1
185) 황진회 외 5인, 2011, p. 33.
186) 49 U.S. Code 13102

Transportation Intermediary, 이하 OTI)으로 규정하고 있음

□ OTI는 해양운송주선인(Ocean Freight Forwarder, 이하 OFF)과 무선박운송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187]

○ OFF는 송하인(Shipper)을 대신하여 선사를 통해 송하인의 화물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출품 선적을 위한 선복예약 등을 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188]

○ NVOCC는 선박을 운항하지 않으나 선사(Ocean Common Carrier)와의 계약 등을 통해 물류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을 의미함[189]

□ 미연방 규정 46(미연방해사위원회 Title 46. Shipping 46 CFR Chapter IV - Federal Maritime Commission)[190] 하위 해외 해운 규정(Sub chapter B - Regulations affecting Ocean Shipping In Foreign Commerce(Parts 515 - 545)에서 OTI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 자격 등 관련 내용을 정의하고 있음

2) 면허 취득 및 개시

□ OTI는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합자회사(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형태로 설립 가능함

□ 별도의 자격 취득을 위한 선발제도나 시험은 없으나 OFF와 NVOCC가 OTI로 통합되어 OTI로서의 운송사업 면허를 미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187)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1998 TITLE I-Amendments To The Shipping Act Of 1984 SEC. 102. Definitions.(17)
188)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1998 TITLE I-TITLE I-Amendments To The Shipping Act Of 1984 SEC. 102.Definitions.(17)(a)
189)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1998 TITLE I-TITLE I-Amendments To The Shipping Act Of 1984 SEC. 102.Definitions.(17)(b)
190) 미연방해사위원회, https://www.fmc.gov/about-the-fmc/fmc-regulations-statutes/, 검색일자: 2020. 6. 15.

이하 미연방해사위원회)로부터 취득해야 함[191]

○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화된 FMC-18 접수시스템 및 해당 지침에 따라 FMC-18 양식(해양운송중개업 면허신청서)을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192]

○ 신청자가 규정상 요구조건 및 위원회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신청서는 거부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거부 사유 설명과 함께 통지서를 발송함[193]

□ OTI 면허 취득을 위한 사전요건으로 미국 국적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해양운송중개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운송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194]

○ 외국 NVOCC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해양운송중개 활동에서 최소 3년의 경험과 해양운송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외국계 NVOCC는 미국 내 사무소가 위치한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비법인 사무소로 운영 가능함

○ 미연방해사위원회는 신청자와 그 참고인이 제공한 정보 외에 상품 수출입 또는 운송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면허나 등록 없이 OTI로 운영했는지 여부, 주 및 연방 범죄 및 경범죄 적용 여부, 자발적 및 비자발적 파산, 미납 세금, 이민 상태 요건 준수, 운송 근로자 신분 확인 자격증의 거부·취소 또는 정지, 관세사 면허의 거부·취소 또는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함

□ OTI의 지불능력과 관련된 증빙은 채권, 보험 또는 그 밖의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재정적인 보증 없이 해양운송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광고할 수 없음[195]

○ OFF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5만달러의 보증금과 함께 미국 지역 사무소당 1만

191) 46 CFR 515.11
192) 46 CFR 515.12(a)
193) 46 CFR 515.12(b)
194) 46 CFR 515.11
195) 46 CFR 515.21(a)

달러 추가 보증금 혹은 보험보증 등을 위원회에 송부하여 승인받아야 함

○ NVOCC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7만 5천달러의 보증금과 함께 미국 지역 사무소당 1만달러 추가 보증금 혹은 보험보증 등을 위원회에 송부하여 승인받아야 함

○ 외국 NVOCC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15만달러의 재정적 책임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직원과 대리인의 해당 행위와 누락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 OTI 단체 또는 협회의 경우 OTI의 운송 관련 활동에 대하여 단체채무, 보험 등으로 재정적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총 300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정적 책임을 설정하거나 개개인에 대해 OFF 또는 NVOCC에서 규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책임을 설정해야 함

□ 재정 안정성에 대해 신청자가 조건부로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위원회의 통지 후 47 CFR 515.21에 규정된 재정 책임 증명서를 위원회의 인허가 국장(Director of the Commission's Bureau of Certification and Licensing)에게 제출했을 시 면허가 발급될 수 있음[196]

○ 신청자가 46 CFR 515.21에 따라 재정적 책임에 대한 증거 및 FMC-1 양식을 제출하고 운임요율표가 게시된 후에 면허가 발급됨

□ 미연방해사위원회는 면허신청자가 신청서에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 신청인의 성실성 및 재정적 책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성, 해상운송 중간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개인의 경험 등 자격요건을 확인함

196) 46 CFR 515.25

라. 국제물류운송인의 서비스 제공 요건

1) 직무범위

□ OFF의 서비스 영역은 화물운송, 관련 서류 작성, 수출신고, 수출 관련 컨설팅 등 13가지로 이루어져 있음[197]

○ ① 항구로 화물이송 ② 수출신고 준비 및 절차 수행(전자 신고포함) ③ 선박예약 및 확인 ④ 화물인도지시서 및 부두수령증 작성 및 처리 ⑤ 선하증권의 작성 및 처리 ⑥ 영사서류 및 관련 증명서 작성 및 처리 ⑦ 창고주선 ⑧ 적하보험 부보 대행(Arrange for cargo insurance) ⑨ 미국 수출규정에 따른 통관업 ⑩ 필요시 은행, 송화주에게 선적정보 또는 선적서류의 작성 및 송부 ⑪ 운임 또는 화주가 선납할 비용의 대납 ⑫ 출발지에서 선박까지 화물운송 주선 ⑬ 수출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 제공 등임

□ NVOCC의 서비스 영역은 운송서비스 중개, 운송료 대납 등을 비롯하여 선적품에 대한 통관지원 등 11가지로 이루어져 있음[198]

○ ① 선사(VOCC)의 운송서비스를 구매하여 타인에게 전매 ② 항만에서 항만 혹은 복합운송 비용의 지급 ③ 송하인과 화물운송계약 체결 ④ 선하증권 및 기타 선적서류 발행 ⑤ 미국 정부 규정에 따라 선적품의 통관지원 ⑥ 내륙 운송 준비(수배)와 내륙운송비 지급 ⑦ 해운주선업체에 합법적인 보상금 지급 ⑧ 출발지 또는 목적지 및 선박 간의 선적 이동 조정 ⑨ 컨테이너 임차 ⑩ 선적지와 목적지 대리점 주선 ⑪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료를 수금하여 NVOCC를 대표하는 화주로서 일반 운송업체에 운송료 지불 등

197) 46 CFR 515.2(h)
198) 46 CFR 515.2(k)

2) 의무

□ 해상운송중개인의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General duties) 및 운송인(freight forwarder)의 의무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의무에서 OTI 및 NVOCC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운송인의 의무(freight forwarder)에서는 내륙운송주선업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각 면허소지자 및 등록자는 연방해사위원회가 지정한 면허 또는 등록번호로만 사업을 진행해야 함[199]

○ OTI의 이름과 자격 또는 등록번호는 면허인 또는 등록인의 사무실 문구 및 청구서에 영구적으로 표기되어야 함

○ OTI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이름, 면허, 면허번호,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등록된 OTI를 대신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OT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별도로 자격면허를 받아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자신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운임요율을 공지해야 함

○ 유효한 OTI 면허를 소지하거나 OTI로 등록되지 않는 한, OTI에 대해 홍보할 수 없음

□ 연방해사위원회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않는 한 OTI는 직·간접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OTI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200]

○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등록이 종료 또는 정지된 모든 직원, 파견직, 임원, 대리인 또는 하위 대리인으로 선박 운송 중개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 면허가 취소된 OTI의 해양운송중개사업 확대 지원

---

199) 46 CFR 515.31(a)-(c),(j)
200) 46 CFR 515.31(c)

○ 운임 또는 화물보상금에 대한 분배
○ 면허인 또는 등록인의 해상운송중개업의 운영 및 통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무해당자가 소유권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개입하게 하는 행위

□ OTI는 해양운송중개거래에 관해 거짓 또는 거짓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청구서, 진술서, 변상서 또는 기타 서류나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을 보조할 수 없음[201]
○ 또한 해양운송중개거래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본인, 발송인, 일반 운송업자 또는 기타 전문가에게 고의로 양도할 수도 없음

□ OTI가 처리할 발송물에 대해 주계약자 또는 송화인이 미국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시 주계약자 또는 송화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202]
○ OTI는 수출신고서, 선하증권, 첨부서류 또는 본 계약 또는 발송인이 공동 실행하는 기타 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표현을 했거나 누락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오류, 누락된 표현, 잘못된 표현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문제가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할 수 없음

□ OTI는 위원회의 공인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의 요청에 따라 해양운수중개업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장부를 검사하거나 사본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대리인의 적법한 질의에 즉시 응해야 함[203]
○ 모든 OTI는 공인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해양운송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장부를 제공하고 공인대리인의 적법한 질문에 즉시 응답할 책임이 있음

□ 어떤 OTI도 해당 OTI 주계약자 또는 송화인의 명시적 서면 권한 없이 어음, 수

201) 46 CFR 515.31(e)
202) 46 CFR 515.31(f)
203) 46 CFR 515.31(g)

표 또는 보증서에 배서할 수 없음[204]

□ OTI는 주계약자 또는 송화인에게 과오납금, 수수료 조정, 요금 인하, 보험금 환급, 보험금 청구에 대해 수령한 보험금, 어음, 신용장, 발송인이 지불해야 하는 기타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음[205]

□ NVOCC와 OTI는 해양운송주선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장부를 체계적으로 종이 또는 전자양식으로 5년간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위원회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함[206]

○ 일반적인 재정 관련 데이터(은행 예금전표, 수표 및 모든 출납, 수취 및 미지급 계정, 일별 현금잔액 계정 등)

○ 선적 관련 서비스에 대한 내용(서비스에 대한 각 송장을 포함하여 면허소지자가 작성, 처리 또는 입수한 각 문서의 사본 등)

○ 면허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수취한 모든 비용에 대해 각 선적별로 구체적인 날짜, 비용 기록

○ 면허자와 주계약자 간의 모든 특별계약과 관련한 원본, 구두일 경우 기록, 이러한 내용의 취소 및 변경

3) 규제

□ 보증과 관련한 유지 조건[207]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OTI 면허 또는 등록을 거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음[208]

○ 채권, 보험 증명 또는 기타 보증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해상운송중개인의 면허

---

204) 46 CFR 515.31(h)
205) 46 CFR 515.31(i)
206) 46 CFR 515.33
207) 46 U.S.C 409 및 46 CFR 515
208) 46 U.S.C 40903

가 취소됨

○ 연방해사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기회를 거친 후, 위원회가 OTI의 자격이 없거나 위원회의 명령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OTI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적절한 면허 또는 등록 없이 영업하는 자는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위반 내용별로 9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칙을 받을 수 있음

○ 고의로 위반한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4만 5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칙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규정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은 위반별로 9천달러에서 4만 5천달러까지 다양하며(46 USC 41107-41109) 지속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각 요일의 위반을 모두 별개의 위반으로 처리함

4) 교육

□ 미국에는 국제물류운송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학위 과정이나 별도의 시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각 회사는 현장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기회를 제공함[209]

□ 단 수출과 관련하여 OFF의 직무에 미국 수출규정에 따른 통관업을 인정하고 있는 바, NCBFAA에서 공인수출전문가(Certified Export Specialist) 및 마스터수출전문가(Master Export Specialis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음

○ 공인수출전문가는 수출 통제 기본사항, 수출 관리 규정, 목적지 국가 통제, 기타 정부기관, 인구 조사, 기록 보관, 보안, 지불 조건, 예약, 항공 운송료, 선하증권, 목적지 국가 요건, 해상화물보험, 수출 라이선스, 마약 집행 기관, 수출 위반 등

209) 해외물류시장 정보 포털, http://www.worldlogis.net/local/law7.do?brdMngId=BWRT_000000000000013&brdId=BRD_0000000000052972, 검색일자: 2020. 6. 9.

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 마스터수출전문가는 미국 수출에 대한 통합 접근법, 수출 규정 준수, 항공 및 해양 수출 물류, NAFTA 수출, 수출 문서, 전자 수출 정보, 국제 결제 조건, 미국 자유 무역 협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마. 보안강화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정 내용

1) 관세사 규정 현대화에 따른 CFR 관세사 규정(19 CFR 111) 개정[210]

□ CBP는 세관 현대화에 따른 관세사 규정의 전면 개정 예고를 통지하였음[211]

○ 본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관세사 규정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Customs Brokers Regulations) NPRM(The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으로 미국 정부기관이 법률, 규칙 제정 시 입법을 예고하는 NPRM 형식으로 고지되었음

○ 상업관세운영자문위원회(Commercial Customs Operations Advisory Committee's, COAC)의 자문을 바탕으로 CBP가 개정을 요청하였음

○ 세관 현대화와 관련하여 우수성 및 전문성 센터(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의 설립과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의 개발로 단일 창구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짐으로써 변화한 세관 환경에 따라 관세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 물품신고(Entry/Immediate Delivery) 및 납세신고(Entry Summary)는 모두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 관세사 등 대리인에 의한 데이터 전송, 이하 ABI)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음
- ABI를 대신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ACE(Automated CommercialEnvironment:

---

210) 본 규정 개정 내용은 개정 예정 공고이므로, 추후 미연방 관보를 통해 규정 개정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음

211) CBP, "Customs Brokers License Exam Information,"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customs-brokers, 검색일자: 2020. 7. 22.

자동무역 유통 시스템)가 새롭게 도입되어, 납세신고에 이용되고 있음

□ 19. CFR. 111(관세사) 규정 대부분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로 관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CBP와 관세사, 고객의 거래 보안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음[212)]

○ 19. CFR 111.2를 통해 지역 허가를 폐지하고 전국 허가 보유자가 미국 세관 모든 영역 내에서 모든 유형의 세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CBP는 이와 관련하여 19 CFR 111.3을 신설하여 관세 사업이 미국의 관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자 함

○ 19 CFR 111.14에서는 면허 신청자의 배경 조사 시 CBP는 재무 안정성을 추가하고 국가 안보 또는 세금 징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의 관계 조사를 포함하도록 배경 조사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음

○ 19. CFR 111.28에서는 관세사의 감독과 통제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다섯 가지를 추가하였음

- ① 시기 적절한 수입신고 및 제세금 또는 기타 채무의 납부, 혹은 고객으로부터 납부받은 제세금 또는 기타 채무의 납부 처리 ② 관세사와 CBP 간의 커뮤니케이션 ③ CBP의 통지, 고지 등에 대한 관세사의 대응 ④ 관세사와 고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⑤ 고용자의 통지, 고지 등에 대한 관세사의 대응 등임
- CBP에 따르면 현대 세관 환경에서 특히 관세사의 감독과 통제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제세금의 납부, 관세사와 CBP 및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 오류는 관세사의 책임감 있는 감독 및 통제의 실패를 입증하는 예시라고 설명하고 있음

○ 19. CFR 111.32에서는 관세사가 자신의 고객이 미국 정부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고 판단되어 대리를 종료(포기)할 때 CBP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212) 미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Modernization of the Customs Brokers Regulations,” 2020. 6. 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6/05/2020-04711/modernization-of-the-customs-brokers-regulations, 검색일자: 2020. 7. 22.

- 관세사가 고객에게 정보의 오류, 누락 등에 대해 조언을 했음에도 고객이 관세사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의 오류, 누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했을 시 이에 대응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종료하는 상황을 의미함
- 제안된 개정안은 관세사에게 긍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력 증가(force multipliers)'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관세사는 또한 적절한 시정조치에 대해 고객에게 조언해야 하며, 19 CFR 111.23에 따라 고객과의 해당 의사소통 기록을 보유해야 함

○ 19. CFR 111.36에 따라 관세사는 국제화물운송인이 아닌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 및 환급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위임장을 받아야 통관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국제물류운송인이 관세사와 수입자 또는 환급 청구인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 공급망 보안, 수수료 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비면허자가 세관서비스 개입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 CBP의 관세사관리부서(CBP's Broker Management Branch)에 따르면 관세사가 국제물류운송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데 약 1.75시간이 소요된다고 함
- 이는 또한 COAC 권고와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COAC는 그 어떤 것도 관세사가 수입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 19 CFR 111.53에서는 관세사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원인으로 재정적 안정성 및 명성, 배경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기타 관련 정보를 추가하였음

2) 관세사 수입자 인증 프로그램(The Broker-Known Importer Program)

□ 2016년 2월 24일 의회는 「2015년 무역 촉진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TFTEA」, 제116조 제정에 따라 수입자 확인(Identification of importers) 19 U.S.C. 1641 (i) 규정을 삽입하였음

□ 관세사는 19 CFR 141.46에 따라 유효한 위임장을 얻어야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위임장에는 제한된 정보[213]만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관세사가 수입자로부터 위임장을 입수할 때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음[214]

○ 수입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특정 관세사가 고객의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수입자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관세사를 찾는 '브로커 쇼핑(broker shopping)' 분위기가 형성됨

○ 관세사가 추가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면 수입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 업무를 처리하여 'shelf company'[215]로 인한 수입 손실, 물품의 보안 위험 증가로 이어짐

○ TFTEA의 116조에서는 ① 비거주 수입자를 포함한 수입자가 신원 확인을 위해 관세사가 수집해야 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② 관세사는 수입자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③ 관세사가 수입자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의 기록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정보 수집에 실패한 관세사에게 벌금 부과뿐 아니라 자격의 정지 및 철회가 가능하도록 재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213)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파트너십, 법인 또는 협회인 고객의 경우 부여자의 생년월일, 파트너십, 회사 또는 협회인 고객의 경우 고객의 상표명 또는 가상 이름, 고객의 물리적 위치(파트너십, 회사 또는 협회인 고객의 경우 물리적 위치는 고객의 본사가 됨) 및 전화번호, 고객의 이메일 주소 및 비즈니스 웹사이트, 사업자 식별번호,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사본, 고객의 국세청(IRS) 번호, 고용주 식별번호(EIN) 또는 수입 업체(IOR) 번호, 최근 신용 보고서 등 일반적인 정보

214) 미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Customs Broker Verification of an Importer's Identity," 2019. 8. 1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8/14/2019-17179/customs-broker-verification-of-an-importers-identity, 검색일자: 2020. 7. 22.

215) 판매용 선반에 진열한 회사라는 뜻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회사를 싼 값으로 사서 이름과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미함

□ 이에 근거하여 CBP는 CFR 19에 수입자 신원 확인(Importer identity verification)이라는 새로운 섹션 111.43을 추가하여 신원 수집 기준을 설정하고, 수입자와 비거주 수입자 고객의 검증 절차를 만들 것을 제안함

○ 이 제안된 규정은 수입자 또는 비거주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 업무를 처리하기 전 관세사가 수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관세사 수입자 인증 프로그램(The Broker-Known Importer Program, 이하 BKIP)은 NCBFAA의 주도하에 CBP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 BKIP는 허가받은 관세사가 수입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수입자를 식별하여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목록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음[216]

○ 수입자 중 수입자 자진신고(Importer Self-Assessment, 이하 ISA) 및 신뢰받는 무역업체 프로그램(Trusted Trader Programs, 이하 TTP)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상황이 BKIP 개발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CBP는 수입자 신원 중 5%가 현재 확인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만 확인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이 사기를 저지르고 불법물품 또는 위조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고자 shelf company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관세사와 결탁하고자 한다고 주장함[217]

○ 2007~2017년 사이 'shelf company'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위반으로 인해 약 33억달러의 관세가 징수되지 못했음[218]

---

216) CBP, "The Broker-Known Importer Program," 2015. 9. 21.,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customs-brokers/broker-known-importer-program, 검색일자: 2020. 6. 9.

217) 미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Customs Broker Verification of an Importer's Identity," 2019. 8. 1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8/14/2019-17179/customs-broker-verification-of-an-importers-identity, 검색일자: 2020. 7. 22.

□ CBP가 승인한 평가 리스트를 통해 관세사는 수입자의 신원 확인을 비롯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분야에서 수입자가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219]

○ 평가리스트는 또한 통관, 기록 보관, 환급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문서 등에 대한 평가 또한 포함하고 있음

○ BKIP는 관세사 및 수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통관 전 수입자들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관세사들은 이를 통해 미국과의 교역에 적격성을 갖춘 수입자를 가려내고 수입자의 ISA 또는 TTP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여 CBP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수입 전에 수입자가 가지고 있는 규정 준수에 관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CBP에게 관세사가 검토를 수행했음을 알리고 평가받은 수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함

○ CBP는 수입자에게 CBP의 표적화 시스템에서 수입자의 위험 프로파일(risk profil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

□ 각 관세사는 다른 관세사가 수행한 검토에 의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입자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음

○ 관세사는 수입자의 규정 준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야 하며, 요청 시 CBP에 확립된 지침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이러한 입증을 위해 CBP로 전송되는 문서 및 데이터는 통관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있음

---

218) 미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Customs Broker Verification of an Importer’s Identity,” 2019. 8. 1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8/14/2019-17179/customs-broker-verification-of-an-importers-identity, 검색일자: 2020. 7. 22.

219) NCBFAA, “Broker Known Importer Program(BKIP),” https://www.ncbfaa.org/Scripts/4Disapi.dll/4DCGI/cms/review.html?Action=CMS_Document&DocID=20820&MenuKey=pubs, 검색일자: 2020. 6. 9.

2. 중국

가. 관세사의 진입 요건

□ 통관을 위탁하는 위탁자(수출입화물취급기업) 및 위탁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해관에 제출한 통관대행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수출입 물품의 위탁자 및 위탁자의 위탁을 수락하고 통관 절차를 대행한 기업은 해당 통관업무에 대하여서는 위탁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가짐

□ 수출입화물취급기업 및 통관대행기업은 법에 따라 해관 등록을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 등록이 없으면 해관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220]

○ 통관대행기업은 해관 신고를 위해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대리하거나 사업 범위를 벗어난 해관 신고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1) 자격의 정의

□ 중국의 통관업의 경우 해관에 등록한 통관기업만이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관기업이란 수출입통관업무를 하려는 통관대행기업과 수출입화물취급기업[221]을 의미하며 해관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함[222]

□ 통관대행기업이란 수출입화물취급기업의 위탁을 받아 위탁자의 이름으로 또는 대행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통관서비스에 종사하는 중국 관내

220) 「중국 관세법」 제11조,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2017年修正版)」,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1880958/index.html, 검색일자: 2020. 6. 22.

221) 수출입화물취급기업이란 다양한 기업이 해당될 수 있으나 통상 수출입물품의 주인인 화주를 의미함

222)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3조

기업법인을 의미하며 관세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중국의 관세사는 중국의 통관신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의미하며 법에 따라 통관 자격을 취득하고 통관대행기업으로 해관에 등록한 후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출입 물품의 통관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수출입화물취급기업이란 화물을 직접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중국 관내 기업 법인, 기타 기관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개인을 포함하기도 함

□ 통관원이란 통관대행기업에서 해관에 수출입통관신고를 하거나 수출입화물취급기업 내 통관부서에서 통관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함

2) 자격 선발 방식 및 응시

□ 중국의 관세사(해관중개인) 선발방식은 시험방식이며, 관세사 자격시험은 중국의 지역별 성에 따른 분류 없이 통일된 형식의 전국심사제도를 실시함[223]

□ 응시자는 해관신고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에 합격해야 함[224]

○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 신고 전문지식, 해관제도 관련 전문지식 및 수출입통관 신고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률, 각종 행정규정 및 해관규정 등이 있음

□ 시험 응시자격으로 중국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23) 시험 명칭은 해관신고실무자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이며, 매 6월경 시험접수를 받아 11월에 시험을 실시함. 응시료는 90위안임

224)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해관 웹사이트(China Customs Brokers Qualification Examination Network)에 등록해야 함(english.customs.gov.cn/statics/13e82652-95df-4532-bd64-of13d3dede15.html, 검색일자: 2020. 11. 23.)

시험 중에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관은 관세사 합격을 취소하고 3년간 재응시 할 수 없음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져야 함

○ 완전한 책임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의 성인

○ 대학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함

○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통관업무를 수행하여 중국 「관세법」에 따라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밀수 행위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관련 법에 따라 관세사 자격증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함

□ 시험유형은 객관식·주관식 혼합유형으로, 시험시간은 총 180분임

○ 합격기준은 총점 200점을 기준으로 통상 110점의 경우 합격함(상대평가이며, 선발인원은 매년 상이함)

□ 시험에 합격 후 관세사(해관중개인) 인증서를 취득하게 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평생으로 중국 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

○ 관세사 인증서가 있는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관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 증명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음

□ 중국 관세사의 경우 해관총서 내 계찰사에서 관세법인 및 관세사를 관리하고 관세사 자격 처벌 규정제도의 연구 및 실행을 담당하고 있음[225]

3) 등록 및 개시

□ 해관 수출입통관업무를 하려는 수출입화물취급기업과 통관대행기업은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226]에 따라 해관에 등록해야 함[227]

---

22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p. 65.

□ 통관기업으로의 등록은 통관대행기업의 등록과 수출입화물취급기업의 등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업종에 맞는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함[228]

○ 수출입통관업무를 하려는 기업은 해당 해관에 등록을 한 후 해관 신고업무를 할 수 있음

○ 통관대행기업은 통관대행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해관에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해관에서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통관대행기업은 대행업체 등록 절차와 함께 본인소유 화물의 해관신고 처리를 위한 등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수출입 상품의 화주인 수출입기업도 직접 소재지 해관에 가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해관에 등록된 통관업자가 해관에 중복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관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229]

□ 해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230]

○ 중국 내 기업으로서 법인이어야 함

○ 수입화물의 불법 밀수 기록이 없어야 함

○ 등록이 취소된 자가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 이전에 불법 밀수 행위가 아닌 사유로 해관이 등록 허가를 취소했어야 함

○ 해관 수출입신고서비스에 필요한 상설사업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226) 2005년 3월 31일 중국 관세청에 의해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의 통관신고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4년 관세행정총회회의에서 「관세 및 수출입신고기관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심의채택 및 전면개정된 후 2018년 일부개정을 거쳐 약칭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음

227)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228)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229)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230)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 해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통관대행기업의 관세사는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밀수행위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며 50만위안의 자본금이 필요함

□ 통관대행기업은 등록 신청을 할 때 관세사의 중국의 해관신고등록 증명서 사본, 사무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입통관업무를 하려는 기업으로서 등록허가를 신청하려면 해관에 신고상황등록표를 제출해야 함[231]

○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관에 신청하고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접수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함

○ 등록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등록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 해관은 등록 신청을 받은 후,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려야 함[232]

□ 수출입통관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등록허가를 신청했을 때 해관은 다음에 해당되면 등록신청을 각하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233]

○ 신청인이 통관업체의 등록허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인 경우 각하함

○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적 형식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며, 보정기한을 초과하거나 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함

---

231)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232)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233)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 신청서류가 단순 오타이거나 오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 내용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서명하여 날인하도록 함
○ 신청서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을 준수하거나 신청자가 해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보정을 완료하면 해관 수출입통관기업 등록 신청을 수락하고 등록결정을 내림

□ 해관은 등록 신청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등록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또한 등록증명서를 함께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함[234]
○ 해관은 등록 신청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면서 행정불복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통지해야 함

□ 등록기간은 2년이며 등록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연장해야 함 [235]
○ 법인의 지점인 경우에도 2년 동안 등록기간이 유효하며, 이 경우에도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법인의 관할 해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함

□ 통관대행기업의 기업명,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통관상황등록표, 중국해관신고등록증서 및 변경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서면으로 등록지 해관에 등록을 변경해야 함[236]
○ 통관대행기업의 명칭, 기업 성격, 책임자 등 해관의 화물관리를 위한 주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지 해관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 통관대행기업의 직원이 변경된 경우, 기업과 그 지사는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지 해관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

234)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235)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236)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 등록된 기업의 등록허가 변경 신청에 대하여 등록지 해관은 등록허가 절차를 참조하여 심사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등록 허가 조건에 부합되게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함[237)]

○ 심사를 거쳐 등록허가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관은 변경을 허가하지 않음

□ 관세사의 등록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세사는 등록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해관은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 관세사가 관세사 등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 만료 40일 전에 신청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신청서 접수 후 절차에 따라 신청자료를 심사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 관세사가 등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더 이상 통관업무를 할 수 없음

□ 등록업체는 등록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기간 만료 40일 전에 해관에 신청해야 함

□ 해관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통관업체의 등록갱신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등록연장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음[238)]

○ 해관은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별도의 결정사항을 통지하지 않을 시에는 갱신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함

○ 해관은 등록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법률, 행정규정 및 해관규정에 따라 등록갱신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237)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238)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 해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등록결정을 하였거나 등록결정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또는 뇌물수수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등록을 받은 경우 해관은 관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등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자격이 없는 신청자에게 등록이 부여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취소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관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불가항력으로 인해 관세사 등록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관은 관세사의 등록 허가를 취소해야 함

○ 관세사의 등록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경우,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해야 함

나. 관세사의 서비스 제공 요건

1) 직무범위

□ 통관대행업자는 수출입화물취급기업을 대신하여 해관에 수출입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239]

2) 의무

□ 통관기업이 통관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해관에 신고할 때에는 통관기업은 상품과 관련되어 진실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일치하게 해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함

○ 신고서의 내용은 계약서, 허가서 및 면허증, 송장, 포장목록, 선하증권 및 항공

239)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화물운송장을 포함한 관련 문서와 일치해야 함

○ 신고서와 상품 간 상품의 이름, 수량, 사양, 가격, 원산지, 거래방식, 원산지국가는 특히 정확해야 함

○ 적하목록(E-manifest) 데이터는 오류 없이 정확히 신고해야 함

○ 해관 신고인[240]은 수출입 관련 신고 시 관련 법, 행정규정 및 해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입통관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241]

□ 통관대행기업은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해관에 '해관신고 등록정보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통관대행기업은 등록허가를 받은 관할 해관 외 구역에서 통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지사를 설립해야 하며, 지사가 소재한 해관에 설립신고를 해야 함[242]

○ 통관대행기업 지사는 신고를 한 해관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통관대행기업의 본사는 그 지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짐

□ 통관기업은 해관에 그가 취급하는 통관업무의 상황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함[243]

□ 통관기업은 해관에서 발급한 등록증서 등을 성실히 보관해야 하고 증명서의 도난 및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함[244]

○ 해관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인증 서류를 재발행해야 함

○ 재발행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분실된 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240) 통관대행기업의 통관담당자 및 수출입화물취급기업의 통관담당자 모두를 의미함
241)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242)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243)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244)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 통관기업이 해관에 제출한 수출입물품의 통관신고서에는 특수스탬프를 인장시켜야 함[245]

○ 통관신고를 위한 특수스탬프는 관세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제작해야 함

○ 통관대행기업과 그 지사의 특수스탬프는 등록허가를 받은 해관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함

○ 수출입화물취급기업의 특수스탬프는 모든 해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용될 수 있음

□ 통관기업이 해관에 수출입신고를 진행할 때에 제출되는 모든 신고서류 및 기재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통관기업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짐[246]

□ 해관은 통관기업에 대해 해당 영업소를 감독하고 현장을 검사하며, 통관기업은 해관이 자료를 열람하려고 요청을 하거나 통관기업 관련 자료를 해관에 송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247]

□ 수입물품의 적시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취급기업 및 통관대행기업은 수입신고를 운송수단 도착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수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15일이 초과한 날부터 신고된 날까지 할증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함[248]

□ 통관기업 등록은 본사 및 지사의 경우 중국국제무역싱글윈도우의 기업정보하위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함[249]

---

245)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246)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247)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
248) 중국 해관총서, 「수입품 신고지연수수료 징수에 관한 중국 관세 지침」,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212175.htm, 검색일자: 2020. 6. 11.
249) 중국 해관총서, 「통관신고 및 검사신청자격 요건 통합에 관한 공고」,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9/1482471/index.html, 검색일자: 2020. 8. 4.

3) 규제

□ 해관은 통관기업의 통관신고업무의 관행을 관리하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해관은 통관기업에 대하여 해관에 대한 수출입신고업무에서 발생한 통관 절차 및 오류사항 및 오류율[250]을 기록하고 기록내용을 공시할 수 있음[251]

○ 통관기업은 해관의 오류기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관오류기록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음

○ 해관은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오류기록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있음

□ 밀수입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해관의 관리감독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관은 「관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 처벌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252]

□ 통관기업이 회사의 상호, 사업자 등 해관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 및 해관규정에 따른 등록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은 경고 처분을 하고 즉시 정정할 것을 명령하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253]

4) 교육 요건

□ 관세사 등록, 통관대행기업의 등록 및 등록기간 연장을 위해서 별도의 보수교육이나 의무교육은 존재하지 않으나 통관대행기업 등록신청 시 해관총서에 통관 관련 데이터 제출에 동의해야 함[254]

---

250) 통관오류율이란 통관업체가 통관 절차의 오류가 발생한 총 횟수를 통관신고 총 횟수로 나눈 백분율을 의미함

251)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252)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9조

253) 「중국 통관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254) 중국 해관총서, 「통관기업 등록 증명서 등 인증서 통합개혁 공고」, http://www.customs.gov.

다. 국제화물운송업자의 진입 요건

□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255]에 의하여 국제화물운송업자의 감독은 중국 상무부가 담당하고 있음

○ 상무부는 국제물류운송주선업을 관리하며,[256] 해당 기업이 국제시장을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257]

1) 자격의 정의

□ 중국의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는 국제화물운송업자를 의미하며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되고 상무부의 공인기관에 의해 등록된 국제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지점을 포괄하는 의미임[258]

□ 국제화물운송업자는 위탁받은 물품에 대하여 대리인으로서 국제화물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음[259]

○ 대리인으로서 국제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국제화물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에 관한 위탁을 수락하고 위탁자를 대신하여 운송을 진행함

○ 국제화물운송업자[260]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운송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운송서류를 발행하며 운송계약을 체결함

---

cn/customs/302249/302266/302269/1482471/index.html, 검색일자: 2020. 8. 4.

255) 중국의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은 2004년 1월 1일에 신설된 「국제화물 운송업 관리에 관한 세부규칙」과 2005년 4월 1일에 시행된 「국제화물 운송업 의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상무부를 통하여 2008년부터 발효됨

256) 상무부는 국제물류운송주선기업 회사의 기본정보, 출원, 책임보험적용범위 및 복합선하증권등록 정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257)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4조

258)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2조

259)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3조

260) 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국제화물 운송업자협회(Chin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및 현지 국제화물운송협회는 상무부 및 현지 유능한 상업 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협회 조항에 따라 회원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화물운송업계의 사업질서를 관리해야 함

2) 등록 및 개시

□ 국제화물운송업체가 되기 위해 별도의 자격시험 등이 필요하지 않음

○ 중국의 국제화물운송업체가 통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통관대행을 위하여 해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국제화물운송업체는 상업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국제화물운송업체임을 상무부 또는 공인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3월 말 이전에 상무부에 연간 사업정보를 보고해야 함[261]

□ 외국인투자에 의해 설립된 국제화물운송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승인증명서를 취득하여 상업등록 절차를 거친 후 전년도 사업 정보를 상무부 또는 공인 기관에 제출해야 함[262]

□ 중국의 지역별 상무부가 해당 관할지역의 국제화물운송업체의 등록을 담당하고 있음[263]

□ 국제화물운송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록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제화물운송업자를 대표하는 자의 서명 및 봉인이 필요함[264]

○ 기록증명서는 상무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수집할 수 있으며 기록증명서를 제출할 때 책임보험계약서, 복합운송장 샘플, 국제화물운송업자의 운송요금청구서 샘플을 제출해야 됨

---

261)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8조
262)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송기업 관리를 위한 규칙」 제2조, 해당 규칙은 2005년 12월 11일에 발효된 「외국인 투자 국제화물 운송 회사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2015년 10월 28일 개정하여 상무부를 통하여 발효됨
263)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9조
264)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10조

□ 국제화물운송업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이 변경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등록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됨[265]

○ 국제화물운송업자의 상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관의 국제화물운송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무효화됨

라. 국제화물운송업자의 서비스 제공 요건

1) 직무범위

□ 국제화물운송업자(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한 국제화물운송업자 포함)[266]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267]

○ 해관신고, 검사, 보험(통관대행기업으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화물 선복 예약, 운송위탁, 창고, 포장

○ 화물 및 컨테이너의 선적 및 하역 감독, 포장 해체, 내륙 운송

○ 국제 전시회, 개인화물 운송대리

○ 국제복합운송(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 포함)

○ 국제 특송(개인 서신 제외)

○ 관련 법률에 따른 기타 국제화물운송사업 및 물류사업

2) 의무

□ 수행업무 중 국제복합운송업무를 제공하는 국제화물운송업자는 화주가 인도한 물품을 수령하면 국제복합운송서류를 발행해야 함[268]

---

265)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12조
266)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송기업 관리를 위한 규칙」 제6조
267)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19조
268) 국제복합운송서류에는 국제화물운송 복합운송계약 및 국제화물운송 복합운송선하증권과 같은 법

□ 중국 내의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국제화물운송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269] 매년 3월 말 이전에 업무별 통계양식을 기입하여 관련 정보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함[270]

□ 국제화물운송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의 부보범위에는 국제화물운송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책임 및 기타 운송주선상 책임이 포함됨[271]

○ 국제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책임보험의 최저보상한도는 1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함[272]

○ 국제화물운송업자가 설립한 각 지사에 대하여 보험의 부보범위 증가액은 20만위안 이상이어야 함

○ 국제화물운송업자가 책임보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변경된 후 30일 이내에 관련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국제화물운송업자는 책임보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업등록정보 및 사업운영정보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함[273]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국제화물운송업자는 상무부가 발행한 기업법인의 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보험 절차를 거쳐야 함

3) 규제

□ 국제화물운송업자는 운송건수 등 연간사업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의무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274]

적 서류가 포함됨

269)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6조
270)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14조
271)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20조
272)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21조
273)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22조
274)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44조

○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국제화물운송을 이행하거나 선하증권번호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제화물운송 주선을 할 수 없음

□ 국제화물운송업자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상무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업을 경고 처분하며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 절차로 이관함

○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활동으로는 업무통계기록, 선하증권등록증명서, 보험계약과 관련된 문서 등을 위조·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산업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 조치를 수행한 경우, 리베이트를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계약을 수행한 경우 등이 있음

□ 상무부는 법률 및 규정 및 처벌 공지를 위반한 기업목록을 게시하고 관련 기관 및 처벌 결정을 산업 및 상업, 해관, 검사 및 검역소, 외환, 세무, 공공 보안 및 기타 기관, 지역 상업 당국 및 산업중개기관에 통지함[275]

□ 중국 국제화물운송업자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최저보수 등의 보수체계는 존재하지 않음

4) 교육 요건(보수교육, 의무교육)

□ 국제화물운송업자로 활동하기 위한 의무교육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격유지를 위한 별도의 보수교육 또한 존재하지 않음

275) 「중국 국제화물운송산업 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관한 세부규칙」 제47조

3. 일본

가. 통관사의 진입 요건

□ 1967년 일본의 관세 확정방식이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면서 통관업자(통관사) 제도가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정착되기 시작함

□ 신고납세제도 방식에 있어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서류의 정확도가 중요해짐으로써 원칙적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소마다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류 등의 내용을 통관사가 심사하게 함

1) 자격의 정의

□ 일본 관세국에서 시행하는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통관사로 활동할 수 있음[276]

□ 통관업체는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통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 통관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명칭 등의 사항을 재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함[277]

2) 자격 선발 방식 및 응시

□ 일본은 통관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통관사 시험제도를 두고 있으며 해당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만 통관사로서

276) 「일본 통관업법」 제25조
277) 「일본 통관업법」 제31조

통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시험과목으로는「관세법」,「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및「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통관서류 작성요령 및 기타 통관 실무,「통관업법」 등에 대해 실시함[278]

○ 통관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재무대신이 결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 세관장이 실시함[279]

○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관사 시험을 치루거나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2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통관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함[280]

□ 통관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정지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자는 통관사로서 업무를 제공할 수 없음

○ 그 밖의 관세 관련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한 통관사로서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 통관사 시험 합격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통관사로서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281]

3) 등록 및 개시

□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282]

○ 허가에는 일반적인 허가 조건 외에 업체별로 추가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 재무대신은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며 허가증을 교부함

---

278)「일본 통관업법」 제23조; 제24조
279)「일본 통관업법」 제27조
280)「일본 통관업법」 제29조
281)「일본 통관업법」 제32조
282)「일본 통관업법」 제3조

□ 통관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통관업자는 각 영업소 책임자의 성명 및 배치하고자 하는 통관사의 수, 통관업 외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종류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재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함[283]

□ 통관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에 관련된 통관업 경영의 기초가 확실한지 여부를 재무대신으로부터 심사받아야 함[284]

○ 재무대신은 허가신청서가 그 인적 구성에 비추어 하고자 하는 통관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졌는지 여부 그리고 통관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함

□ 재무대신은 허가신청서가 성년후견인,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업에 대해 허가할 수 없음[285]

○ 그 밖의 통관업 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는 사유로는 일본의 「관세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에 처한 자, 통관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음

□ 통관업자가 통관업무를 하는 영업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286]

□ 통관업자가 통관업을 폐지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에 통관업에 대한 허가는 소멸하며, 재무대신은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해

283) 「일본 통관업법」 제4조
284) 「일본 통관업법」 제5조
285) 「일본 통관업법」 제6조
286) 「일본 통관업법」 제8조

야 함[287]

○ 사망한 경우에 허가의 승계신청을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 있는 때에도 통관업 허가가 소멸함

○ 통관업 허가가 소멸한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통관 건이 있는 때에 해당 건은 그 허가를 받았던 자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재무대신은 통관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통관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일본의 관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등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288]

□ 통관업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상속이 있는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해당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함[289]

○ 통관업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내에 그 승계에 대하여 재무대신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 재무대신은 승계인에 대하여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함

○ 통관업자에 대하여 합병이나 분할이 있는 경우 또는 통관업자가 통관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전에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분할로 통관업을 승계한 법인 또는 통관업을 양수한 자는 해당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나 분할한 법인 또는 그 통관업을 양도한 자의 통관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 통관업자가 통관업 영업 시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허가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통관업 허가가 소멸된 때에는 통관업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재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함[290]

---

287) 「일본 통관업법」 제10조
288) 「일본 통관업법」 제11조
289) 「일본 통관업법」 제11조의2

나. 통관사의 서비스 제공 요건

1) 직무범위

□ 통관업무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행하는 「관세법」상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291]

○ 「관세법」 및 기타 관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세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승인신청,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을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관세의 확정 및 납부절차를 포함)

- 수출 또는 수입 신고 및 「관세법」상 승인 신청
- 일본과 외국 사이를 오가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적재신고
-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에 외국화물 장치 절차, 보세공장의 외국화물 보세작업 사용 절차 또는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승인 신청 또는 보세전시장으로 반입할 외국화물에 관한 신고

○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에 대하여 행정불복법 또는 「관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장 또는 재무대신에 대한 불복신청

○ 통관 절차, 불복신청 또는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세관의 조사, 검사 또는 처분 관련 세관에 대하여 하는 반대 주장 또는 진술

○ 통관업자는 통관업무 외에 그 관련 업무로서 통관업자의 명칭을 이용하여 타인의 의뢰에 응하거나 통관업무에 제반되는 관련 업무 또한 수행할 수 있음[292]

□ 통관업자에 속한 통관사는 타인의 의뢰에 따라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서류(통관사가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에서 수행하는 통관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함)의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기명날인함[293]

---

290) 「일본 통관업법」 제12조
291) 「일본 통관업법」 제2조
292) 「일본 통관업법」 제7조
293) 「일본 통관업법」 제14조

□ 통관업자가 세관에 한 납세신고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증액경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294]

○ 해당 관세액의 증가가 계산 또는 기록상 오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에 기인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함

□ 통관업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행하는 통관 절차에 관하여 세관직원으로부터 「관세법」상 검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게 될 때에는 통관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입회를 할 수 있음[295]

□ 통관업자는 재무대신 또는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등의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296]

2) 의무

□ 통관업자는 통관업무를 적정히 이행하기 위하여 통관업무를 이행하는 영업소마다 통관사를 배치해야 함[297]

○ 해당 영업소에서 취급하는 통관업무에 관련된 물품이 특정 종류의 화물로 한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관사를 두지 않아도 됨

□ 통관업자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298] 통관사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통관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없음[299]

○ 통관업자가 아닌 자는 통관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300] 통관사가 아

294) 「일본 통관업법」 제15조
295) 「일본 통관업법」 제16조
296) 「일본 통관업법」 제40조의2
297) 「일본 통관업법」 제13조
298) 「일본 통관업법」 제17조
299) 「일본 통관업법」 제33조
300) 「일본 통관업법」 제40조

닌 자는 통관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통관업자는 통관업무의 요율을 의뢰자가 보기 용이하도록 영업소에 게시해야 함[301]

□ 통관업자 및 통관사, 그 밖의 통관업무 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통관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으며, 이들이 통관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302]

□ 통관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통관사는 통관업자 또는 통관사의 신용 또는 품위를 해할 행위를 해서는 안 됨[303]

□ 통관업자는 통관업무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그 취급에 관련된 통관업무에 관한 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함[304]

○ 통관업자는 통관사, 그 밖의 통관업무 종사자의 성명을 재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함

○ 통관업자는 수행한 통관업무 건수, 이에 대하여 받은 요금액, 그 밖에 통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1회 재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함

□ 재무대신의 업무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통관업자는 해당 업무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305]

○ 통관업자는 재무대신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통관업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를 제공해야 함[306]

○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세관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함

---

301) 「일본 통관업법」 제18조
302) 「일본 통관업법」 제19조
303) 「일본 통관업법」 제20조
304) 「일본 통관업법」 제22조
305) 「일본 통관업법」 제33조의2
306) 「일본 통관업법」 제38조

3) 규제

□ 재무대신은 통관업자가 「관세법」에 근거한 명령이나 이에 근거한 처분이나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307]

□ 재무대신은 통관사가 「관세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통관사에 대하여 견책조치하고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음[308]

□ 재무대신은 통관사에 대하여 특정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관사가 종사하는 관할 담당세관직원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하며 처분을 할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통지해야 함[309]

□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업을 영위한 자 및 통관업 허가 시 붙여진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화물 외의 화물에 대하여 통관을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310]

○ 통관업무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와 통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행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됨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통관업무의 확인을 받은 자 또는 통관업무의 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하여 통관업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311]

---

307) 「일본 통관업법」 제34조
308) 「일본 통관업법」 제35조
309) 「일본 통관업법」 제37조
310) 「일본 통관업법」 제41조
311) 「일본 통관업법」 제42조

□ 관세 법률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통관업무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세관직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답변을 하는 등 통관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312]

□ 통관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통관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및 타인에게 통관업자 또는 통관사의 명칭을 대여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313]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종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함[314]

□ 통관업자의 보수의 경우 일본세관은 업무 대행 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최고요율규정을 두고 있음

○ 수입신고 1만 1,800엔, 수출신고 5,900엔 등 업무별로 각각 설정되어 있음

4) 교육 요건

□ 통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통관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은 없음[315]

□ 일본통관업연합회에서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와 통관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수교육 개념의 전문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필수는 아님[316]

---

312) 「일본 통관업법」 제43조
313) 「일본 통관업법」 제44조
314) 「일본 통관업법」 제45조
315) 일본통관사연합회, 「通関士試験·専門研修」, http://www.tsukangyo.or.jp/training/#professional, 검색일자: 2020. 7. 14.
316) 일본통관사연합회, 「通関士試験·専門研修」, http://www.tsukangyo.or.jp/training/#professional, 검색일자: 2020. 7. 14.

○ 관세평가, 감면, 농수산품 또는 섬유, 화학제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등 실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짐

다.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진입 요건

□ 일본의 화물이용운송사업(포워딩) 제도는 2003년 「화물이용운송사업법」[317] 도입으로 일본 포워딩의 운임·요금은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관리로 전환되었음[318]

○ 화물이용운송사업은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제외한 영역),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복합운송 및 복합운송연계 집배송 한정)으로 구분됨

○ 과거의 「화물운송취급사업법」에서는 화물취급사업과 화물이용운송사업이 구분되었지만, 개정된 「화물이용운송사업법」에서는 이를 통합하였음

1) 자격의 정의

□ 일본의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는 화물이용운송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 및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의미함[319]

○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 외의 영역을 의미함

○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선박운송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철도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에 관한 주선(복합운송주선)을 의미함

---

317) 화물이용운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이용운송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화물유통 분야의 이용자 수요의 고도화 및 다양화에 대응한 화물운송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그 편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프레이트포워딩을 관리하는 일본의 법률. 2003년에 제정되어 2008년 6월 18일 개정되었음

318) 최영석, 2011, p. 132.

319)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1조

2) 등록 및 개시

□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이 행하는 등록을 해야 함[320]

○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송구간의 범위 안에서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음

○ 화물이용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이 300만엔 이상이어야 함[321]

□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322]

□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운송수단의 종류, 운송구역 또는 구간 및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 함[323]

○ 사업 계획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화물이용운송사업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324]

○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출해야 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주식의 인수 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법인이 아닌 법인이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 임원 또는 직원의 명단 및 이력서를 제출해야 함

---

320)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3조
321)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322)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20조
323)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4조
324)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개인이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조서, 주민등록 초본, 이력서를 제출해야 함

□ 국토교통대신은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의 영업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함[325]

□ 국토교통대신은 등록 신청을 한 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이 집행되고 그 집행이 끝나고 집행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함[326]

○ 그 밖의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가 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화물이용운송사업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상기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됨

□ 국제화물운송 또는 국내화물운송에 관하여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함

○ 그 밖의 외국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단체, 법인으로서 상기의 사람이 그 대표자인 것 또는 이들이 그 임원의 3분의 1 또는 의결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단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토교통대신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 등도 결격사유에 해당됨

□ 등록된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

325)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5조
326)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26조

대신이 실시하는 등록사항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사항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327]

○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변경이 있을 때 또는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해야 함

○ 국토교통대신은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항을 제1종 등록부에 등록해야 함

□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 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를 공유하거나 공동 경영에 관한 협정 및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해야 함[328]

□ 국토교통대신은 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스스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시 화물이용운송사업에 대해 등록 및 허가함[329]

○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등록 거부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음[330]

□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이용 운송에 따른 운송 기관의 종류 등 기타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 계획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 함[331]

□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이용운송약관, 사업의 종류 등 공고, 사업개선명령,

---

327)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17조
328)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11조
329)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23조
330)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22조
331)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21조

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제반 규정은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규정과 동일함

라.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요건

1) 직무범위

□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이용운송사업에 부대하여 화물의 포장, 보관 또는 구분, 기타 화물이용운송사업에 부대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음[332]

○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 사업에 추가적으로 화물의 포장 등을 할 경우에는 적하화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화물취급 직원에 대한 적절한 지도 등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2) 의무

□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운송서비스 제공 시[333] 특정 화주에 대하여 부당하고 차별적인 취급을 할 수 없으며[334]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335]

□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이용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운송약관에는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336]

○ 국토교통대신이 표준이용운송약관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자가 표준이용운송약관과 동일한 이용운송약관을 정하거나 실제로 정하고 있

---

332)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18조
333)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334)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10조
335)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13조
336)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18조

는 이용운송약관을 표준이용운송약관과 동일한 것으로 변경한 때에는 그 이용운송약관은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운송방법에 따른 운송기관의 종류, 운임 및 요금, 이용운송약관 등 기타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함[337]

□ 화물이용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영업대상이 화물이용운송사업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표시, 광고 기타의 행위를 할 수 없음[338]

○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이용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영업범위가 화물이용운송사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대신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함[339]

○ 국토교통대신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직원에게 화물이용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기타 영업소의 회계의 상황이나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장부 서류 기타의 물품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음

□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의 포장, 보관 또는 구분(화물 포장 등) 시 적재된 물품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340]

○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화물의 취급에 관한 직원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공지 또는 지도 및 위험물 기타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의 포장 등을 할 때 당해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화약류 기타 위험 물질 등의 운송을 취급할 때에는 다른 화물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341]

---

337)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19조
338)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51조
339)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55조
340)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3) 규제

□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이용운송사업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운송약관 변경,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을 명령할 수 있음[342]

○ 국토교통대신은 운임 또는 요금이 이용자의 편리 기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운임 또는 요금 변경 명령과 그 밖의 화주의 편의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이용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 또는 등록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했을 때에는 3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343]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위해 이용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344]

○ 그 밖의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을 대여하여 경영을 한 자,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사항을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 「화물이용운송사업법」상 명령 또는 이에 따른 처분 또는 등록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함[345]

---

341)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342)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12조
343)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16조
344)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60조

□ 「화물이용운송사업법」상 명령 또는 이에 따른 처분 또는 등록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이 정지되었음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함[346]

○ 그 명의를 타인에게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위해 대여한 자,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경영하게 한 자, 제1종 화물이용운송사업 중 등록사항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함[347]

□ 「화물이용운송사업법」에 의한 각종 명령(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에 관한 것에 한함)을 위반한 자는 1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348]

□ 「화물이용운송사업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349]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이용운송사업법」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350]

○ 「화물이용운송사업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공시해야 할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351]

---

345)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61조
346)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62조
347)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63조
348)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64조
349)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65조
350)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67조.
351)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67조.

4) 교육 요건

□ 일본의 경우 화물이용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나 보수교육제도는 없음

4. 독일(EU) 및 영국

□ 유럽의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독일[352] 및 영국을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음

○ 독일은 EU의 중심축으로 공동체법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지리적인 강점으로 유럽의 교통과 화물운송의 주요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353]

○ 영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규제가 완화되며 유럽에서 물류시장이 가장 성숙한 국가로, 브렉시트로 2021년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관세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 중이나 현재까지 통관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개정은 없었음

○ EU의 세관대리인은 특히 중소기업에 무역 준수를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연합(EU)과 그 개별 회원국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음[354]

□ 독일 및 영국의 경우 국제물류운송인이 면허나 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통관업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EU 공동 규정을 바탕으로 국내 일부 규정, 지침 등을 통해 업무내용, 교육요건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352) 독일의 「상법」과 관련하여 물류업을 담당하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2006 독일 법령용어 해설집』(강현철·김상중·김은경·박기병·유성재·이시우·장병일·정승환, 한국법제연구원, 2006)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353) 신동선·김건영, 『EU 주요국 물류서비스 현황 및 진출 확대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9., pp. 11~15.

354) Ewa Gwardzińska, "The role of customs brokers in facilitating international trade," *World Customs Journal*, Vol. 8, No. 1, 2014. 3., p. 63.

○ EU 공동 규정 내에 세관대리인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독일 및 영국의 경우 별도의 면허나 시험이 없는바, 통관업자에 대해 세관대리인과 국제물류운송인의 요건을 함께 기술하였음

○ 특히 독일과 영국의 경우 법률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협회에서 개발한 기본 약관(General Terms and Conditions) 형태로 세분화하여 기술된 형태를 취하고 있음[355]

○ 기본 약관이 법률처럼 의무적인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독일을 비롯하여 특히 국제물류운송업과 관련된 성문법규가 없는 영국의 경우 국제물류운송업 종사자에 관한 표준거래약관을 계약 시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일부 참조하였음[356]

-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물류협회(Deutschen Speditions und Logistikverband, 이하 DSLV)의 표준약관(Allgemeine Deutsche Spediteurbedingungen, 이하 ADSp)을 일부 참조하였음
- 영국의 경우 HMRC의 공식 물류업자 및 관세사 교육기관인 영국국제화물협회(British International Freight Association, 이하 BIFA)의 표준거래약관(Standard Trading Conditions) 내용을 일부 참조하였음

가. 세관대리인 및 국제물류운송인의 진입 요건

1) 자격의 정의

☑ 세관대리인

□ 독일은 통관업 관련 절차 대부분에 「EU 공통관세법(Regulation(EU) 952/2013 of

355) Maika Watanuki, "Review of Logistics Service Regulations for Freight Forwarding Business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7401, World Bank Group, 2015. 8., pp. 20~21 및 영국 조사 내용 반영

356) Maika Watanuki, 2015, pp. 20~21 및 영국 조사 내용 반영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13, 이하 UCC(Union Customs Code)」을 적용하고 있으며, EU 국가 중 가장 충실하게 UCC를 반영하고 있음

○ UCC 제2장 「관세법」 관련자들의 의무와 권리(Chapter 2. Rights and obligations of persons with regard to the customs legislation) 제2절 세관대리(Customs Represent)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UCC를 제외하고 별도로 세관대리인에 대한 면허와 직무를 규정하는 독일 국내 규정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EU는 UCC상에서 중개인으로서 세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세관대리인(Customs Representative)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UCC에서는 세관대리인을 관세청과의 거래에서 「관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와 수속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임명한 자로 정의하고 있음[357]

□ 영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세관대리인 관련 면허와 관련된 법이 없으며 현재 EU 탈퇴와 관련하여 수출입 관련 법 일부가 개정 중에 있으나 통관업에 대한 규정의 제·개정은 없었음

○ 단 BIFA에 따르면 영국 관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이하 HMRC)은 새로운 세관 신고 서비스 시스템(Customs Declaration Service, 이하 CDS)이 2021년까지 기존의 수출입물류 세관처리 시스템Customs Handling of Import Export Freight, 이하 CHIEF)과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들은 점차적으로 개정될 예정임[358]

---

357) EU 법령포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3R0952&from=EN, 검색일자: 2020. 6. 24.

358) BIFA, "Freight forwarders says HMRC is acting pragmatically over implementation timetable for New Customs declarations processing system," 2020. 4., https://www.bifa.org/news/articles/2020/apr/freight-forwarders-says-hmrc-is-acting-pragmatically-over-implementation-timetable-for-new-customs-declarations-processing-system?l=y, 검색일자: 2020. 6. 23.

□ 영국 BIFA는 『통관업자를 위한 지침서(*A Guide to Preparing to Become a Customs Agent*)』 및 『HMRC 대리지침서(*Guide to Representation with HMRC*)』를 출간하여 세관대리인이 되는 방식 및 권리, 의무,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브렉시트로 인한 관세사 관련 지침서의 개정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제물류운송인

□ EU는 UCC상에서 국제물류업 종사자에 대해 운송인(Carrier)이라고 통칭하고 있음

○ UCC에서는 별도의 세분화된 분류 없이 운송인(Carrier)의 정의와 운송인의 수출입 적하목록 제출의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운송인은 연합국 내로 물품의 운반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그 물품의 운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359]

-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은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선박 공유 또는 계약 협정에 따른 해상 또는 항공 교통의 경우, 운송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화물 운송을 위한 선하증서 또는 항공 운송장을 발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 독일은 「상법」상에서(Handelsgesetzbuch, German Commercial Code, 이하 HGB) 운송인의 정의 및 직무, 책임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운송인(Spediteur, 이하 운송인)은[360] 계약에 의해 화물 발송을 주선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361]

○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운송인은 운송을 주선하는 중개자(Spediteur)이자 스스로 물품을 이행할 권리가 있는 운송 주체자(Spediteur im Selbsteintritt)[362]로서 법적 지위를 가짐[363]

---

359) EU 법령포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3R0952&from=EN, 검색일자: 2020. 6. 24.
360) HGB Section 453
361) HGB Section 457
362) HGB Section 458 본문에서는 '운송인'으로 통일하여 사용
363) 이기준·송희영, 「Freight forwarder의 역할과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인프라 확충방안」,

- 특히 운송주체자(Spediteur im Selbsteintritt)의 경우 미국의 NVOCC와 유사한 개념임

○ HGB의 Book.4 상업거래 Commercial transaction(German Handelsgeschäfte)의 Freight business(German Frachtgeschäft) 및 Forwarding agent business (German Speditionsgeschäft) (제343조~제475h조)에서 운송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운송인에 관련한 규정의 집행 및 관리는 독일 연방 교통국(Federal office for Goods Transport)에서 담당하고 있음[364]

□ 영국은 국제물류운송인(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에 대해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달리 명문화된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의·자격 요건·직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개념이 없음

○ 단 HMRC에서는 화물 운송업자에 대해 '물품 통관을 준비하고 모든 서류를 보관하며 화물 포장 감독을 비롯하여 위험한 물품의 이동을 처리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음[365]

2) 등록 및 개시

□ 독일의 경우 UCC상의 세관대리 요건을 제외한 별도의 세관대리인에 대한 등록 및 개시 요건이 없으며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등록 및 개시 요건 또한 없음

○ 단 DSLV의 표준약관에서는 운송인이 위임장을 득한 후 직접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366]

『관세학회지』, 12-1, 한국관세학회, 2011. 2., p. 446.

364) Maika Watanuki, 2015, p. 18.

365) HMRC, "Freight forwarding: moving goods," 2012. 9. 12., https://www.gov.uk/guidance/freight-forwarding-moving-goods, 검색일자: 2020. 6. 29.

366) DSLV, "ADSp 2017," https://www.dslv.org/dslv/web.nsf/gfx/F486B2D03DC404C6C12583F3003EC7AC/$file/DSLV-ADSp-2017-EN.pdf, 검색일자: 2020. 7. 1.

□ UCC에 따르면 누구든지 세관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리는 직접적으로 세관대리인이 타인의 명의 및 타인 대신 활동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세관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타인을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음[367]

○ 세관대리인은 EU 관세 영역 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대리인이 EU 관세 영역 내에서 설립되지 않아도 되는 자를 대리할 경우 세관대리인은 업무를 포기할 수 있음[368]

□ 세관 당국과의 업무 처리 시 세관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활동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하고, 그 대리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또한 지정해야 함[369]

○ 자신이 세관대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세관대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명시한 사람은 자신의 명의 및 자신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함

○ 세관 당국은 자신이 세관대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명시한 사람에게 대리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권한 부여의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특정한 경우에 세관 당국은 그러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지 않음

○ 세관 결정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관대리인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사본, 위임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제공해야 함[370]

□ 영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세관대리인에 대한 등록 및 개시 요건이 없으며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등록 및 개시 요건 또한 두고 있지 않음

○ BIFA의 표준거래약관 및 HMRC 대리 지침서에 따르면 국제물류운송인이 위임장을 득한 후 직접 대리인으로서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

367) Regulation(EU) 952/2013 Article21
368) Regulation(EU) 952/2013 Article18(2)
369) Regulation(EU) 952/2013 Article 19
370) Delegated Regulation(EU) 2015/2446 CHAPTER 2 Notes relating to data requirements 3/3,3/4

있음[371]

- HMRC에서는 간접 대리인의 경우 내·외부 가공 절차, 일시수입, 관세유예(end-use relief) 등의 대리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세관대리인 교육을 지원하는 세관보조금제도(Customs Grant Schemes)의 경우 HMRC에 신고를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자격이 주어짐

□ 영국의 경우 HMRC에서는 국제물류운송인이 세관대리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세금 지불에 필요한 채권 및 보증(bonds and guarantees)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의 보유 및 특정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을 조언하고 있으며,[372]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음[373]

○ 수출입물류 세관처리(Customs Handling of Import Export Freight, 이하 CHIEF)는 수입자, 수출자, 국제물류운송인이 전자적으로 관세와 세금을 계산하고 출입 오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최근 개선된 프로그램인 세관신고서비스(Customs Declaration Service)와 병행 운영 중에 있음

○ 커뮤니티시스템 제공자(Community System Providers): 세관대리인에 의한 전자 세관신고가 제출되면 단일 전자 환경(single electronic environment)에서 HMRC에 의한 위탁의 허가를 받은 재고 보유자가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함

○ 회계시스템(Flexible Accounting System) & 연기승인번호(Deferment Approval Number): 효율적으로 국경으로부터의 상품이 반출되기 위해 제세금 납부가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세금 연기계정(Duty Deferment Account)은 관세와 세금 납부를 유예해 국경에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한 보증 기반 프로그램임

---

371) HMRC, “Get someone to deal with customs for you,” 2019. 1. 12., https://www.gov.uk/guidance/appoint-someone-to-deal-with-customs-on-your-behalf, 검색일자: 2020. 6. 29.
372) HMRC, “Customs and frontier controls,” https://www.gov.uk/guidance/freight-forwarding-moving-goods#customs-and-frontier-controls, 검색일자: 2020. 7. 1.
373) BIFA, *Guide to Preparing to Become a Customs Agent*, 2019. 2., pp. 3~4.

○ 세관 창고 및 일시보관시설(Customs Warehousing and External Temporary Storage Facility): 세관대리인은 외부 임시 보관 시설 요청에 따라 항만 또는 공항의 승인된 구역 안 또는 외부에 위치한 장소에 세관 절차 진행 전 또는 재수출 전 물품을 보관할 수 있음

나. 세관대리인 및 국제물류운송인의 서비스 제공 요건

1) 직무범위

☑ 세관대리인

□ UCC에서는 회원국들이 EU 규정들을 기반으로 세관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되 세관대리인이 그가 속한 회원국에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각국의 직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374]

○ 본 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대리의 형태와 그에 따른 직무 범위도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세관대리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UCC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신고를 비롯한 제세금 납부, 품목 분류, 채무 이행 등 일련의 통관과정에 대해 대리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영국의 경우 BIFA에서는 세관대리의 전문 기능에 대해 영국 외의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무역업자를 대신하여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375]

○ 세관대리인의 주요 직무는 HMRC에 수출입 신고, 수입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납부, EU 역내 물품이동 시 통계 데이터를 영국 내부 통계시스템인 'Instrastat'

374) Regulation(EU) 952/2013 Article 18(3)
375) BIFA, *Guide to Preparing to Become a Customs Agent*, 2019. 2., p. 1.

에 저장하는 것 등임

○ 또한 세관대리인은 세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법적 자문, 세관 활동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주요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물위생 또는 수의학적 요건, 제약 또는 기술 규정, 쿼터, 면허요건, 이중용도기술, 시장보호 및 시장접근, 무역표준요건(Trading Standards requirements), 통합관세율(The Integrated Tariff of the United Kingdom)에 관한 자문
- 특히 BIFA에서는 통합관세율에서 물품의 수출입 요건과 세관 절차코드(Customs Procedure Codes, CPCs), 필요 서류, 물품코드(commodity codes)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중요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세관대리인의 통합 관세율표에 대한 인지 및 정확한 해석이 세관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중요 요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국제물류운송인

□ 유럽운송물류서비스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Forwarding, Transport, Logistic and Customs Services)에서는 국제물류운송서비스(Freight Forwarding and Logistic services)에 대해 통관 및 자문 또한 포함된다고 정의하여 세관대리인과 운송인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국제물류운송서비스는 물품의 운송, 통합, 보관, 취급, 포장 또는 유통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서비스 및 관세와 세금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공적 목적의 물품 수입 신고 등에 국한되지 않고 자문 및 보조(ancillary)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임[376]

○ 이 밖에도 물품의 운반, 취급 또는 보관과 관련된 기술과 같은 현대적인 정보통신 물류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실상의 총 공급망 관리를 의미함

- 유럽 운송인의 업무는 국제운송의 계획, 운항, 관리, 운송조건의 설정, 통지, 운송계약의 체결, 보관, 포장, 운송서류의 작성, 인도 및 인수, 화물의 통관, 검사 등 관청 수속, 화물의 인도 및 인수와 그 전후의 운송취급, 운임, 요금

376) European Commission, *CASE AT.39462 – Freight forwarding*, 2012. 8., p. 10.

등의 지불, 청구 및 운송 비용의 관리, 보험수배, 운송정보의 제공, 조사 등이 있음[377]

□ 독일연방물류협회에서는 운송인의 전통적인 4개 서비스 영역을 운송, 취급, 보관 및 세관통관으로 분류하고 있음[378]

○ 독일연방물류협회에서는 최근 예비 부품 물류와 관련한 품질관리, 주문, 반품관리 등의 서비스는 물론 산업용 사전조립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위험물, 식품, 의약품 등 민감한 상품의 물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영국의 국제물류운송인은 크게 중개자(Agent)로, 또는 주체자(Principal)로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379]

○ 중개자는 송하인 및 수하인에게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정하여 그에 따르는 절차를 대행하거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HMRC에서는 국제물류운송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통관을 선정하고 있음[380]

○ 주체자로서 국제물류운송인은 독자적인 시설을 갖춘 후 집하 및 발송업무를 행함

○ 국제물류운송인의 기본적인 업무는 통관 및 선적 관련 서류 준비, 세관대리서비스,[381] 국가의 규칙과 규정에 대한 자문, 선적을 위한 운송 방법 지정 및 관리, 운임 협상, 화물 보험, 화물 선적 예약, 수출용 제품 포장, 위험물 운반, 국경 통관 및 관세 납부 및 관리 등이 있음[382]

---

377) 배백식,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전략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07. 8., p. 19.

378) DSLV, "Speditionen und Logistikdienstleister - Kerngeschaft und Leistungsumfang," https://www.dslv.org/dslv/web.nsf/id/pa_de_allg_info.html, 검색일자: 2020. 7. 7.

379) 이기준·송희영, 「Freight forwarder의 역할과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인프라 확충방안」, 『관세학회지』, 12-1, 한국관세학회, 2011. 2., p. 445.

380) HMRC, "Freight forwarding: moving goods," 2012. 9. 12., https://www.gov.uk/guidance/freight-forwarding-moving-goods#customs-and-frontier-controls, 검색일자: 2020. 7. 1.

381) BIFA, *Setting up as a Freight Forwarder*, 2012, p. 1.

382) 영국 국제무역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Moving goods and using freight

2) 의무

☑ 세관대리인

□ 독일은 세관대리인의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UCC상 대리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을 따르고 있음

□ UCC에서는 EU 역외의 무역업자의 통관 관련 행위에 따른 책임은 EU 역내 설립된 세관대리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UCC 제18조의 1에서는 누구나 세관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EU에 기반을 두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제18조의 2에서 세관대리인이 EU 관세 영역 내에서 설립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는 EU 역내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음

○ 통관 절차의 이행이나 통관 통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는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시간 내에 모든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적절한 형태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당 당국에 제공해야 함[383]

□ EU 세관대리인의 의무는 위임 유형에 따라 직접대리일 경우 및 간접대리일 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 채무(customs debt)에 대해서도 위임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384]

○ 관세 채무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수출입관세를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채무를 의미함

○ 세관대리인이 자신의 지연계좌(deferment account)로 신고했다면, 관세 채무가 지불되는 순간까지 해당 세관대리인이 세관 채무를 보증함

---

forwarders," 2019. 10. 11., https://www.great.gov.uk/advice/moving-goods-and-using-freight-forwarders/, 검색일자: 2020. 7. 1.

383) Regulation(EU) 952/2013 Article 15(2)

384) Regulation(EU) 952/2013 Article 18

○ 직접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하며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대행함
- 수입신고 대리인이 관세납부 의무, 관세 채무를 비롯한 수입신고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
- 직접대리인이 모든 신고와 관련한 기록의 유지, 감사 추적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납부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경우 공동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됨
- 만약 대리인이 상품이 입고된 세관 절차(내부 처리 또는 세관 창고 등)의 승인 보유자인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불법적으로 물품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을 시 관련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대리인이 하위 대리인에 업무를 위임하려면 대리인과 주계약자가 합의하여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위 대리인은 주계약자를 직접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므로 스스로를 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발생하는 관세 채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짐

○ 간접대리의 경우 주계약자의 명의로 업무를 대행함
- 간접대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납부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통관 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그러나 간접대리 시 주계약자의 대리인이 간접대리인으로 세관 신고를 이행했을 시, 대리인과 주계약자는 세관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됨
- 대리인이 하위 대리인에게 세관 신고 업무를 위임하면, 하위 대리인과 주계약자는 세관 채무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게 됨
- 하위 대리인이 대리인에게 고용된 형태의 경우 대리인도 책임을 질 수 있음

□ 영국 또한 관세 채무에 대한 직접 및 간접 대리의 위임유형에 따른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UCC상 내용과 동일함[385]

○ 2004년 1월 영국은 HMRC의 공고(Notice n. 199 of January 2004)를 통해서 직접대리 또는 간접대리에 대한 관세 채무의 위임관계를 분류한 내용을 고지

385) CONFIAD, *The Impact of the Customs Representation on the EU's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2007. 5. 30., p. 35.

하였음

- 승인된 경제운영자(AEO)가 세관대리인에게 세관 신고의 대리를 위임했다면 대리인은 채택된 대리인의 종류(간접 및 직접 대리)에 따라 관세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제물류운송인

□ 독일 운송인의 권리 및 의무는 화물의 안전, 위험에 대한 통지, 위임에 따른 통관 등이 있으며 UCC상에는 운송인의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 내용이 없음

□ 독일 HGB는 운송인(특히 주선업)의 법 규정 정비를 통해 운송인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의무와 계약상 의무로 분류하고 있음[386]

○ 법정의무로는 운송로 및 운송수단의 결정, 운송계약의 체결, 창고계약 및 하수운송주선계약의 체결, 운송인에게 정보제공, 손해배상채권의 담보 확보 등이 있음[387]

○ 약정에 의한 의무로는 포장, 보험계약 체결, 상표 부착, 통관업무 등이 있음[388]

○ 일반 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수취에서 인도 시까지 발생한 멸실, 훼손 및 연착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상법」상 규정하고 있음[389]

○ DSLV에서는 특히 통관과 관련하여 ADSp상에 운송인이 위임장에 따라 직접대리인으로서 통관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390]

- 물품이 의심스러운 경우, 합의된 목적지로의 화물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통관을 위임받은 운송업자는 세관 또는 기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음
-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할 때마다 물품 포장을 개

386) HGB Section 454
387) HGB Section 454(1)
388) HGB Section 454(2))
389) HGB Section 425(1)
390) DSLV, *Allgemeine Deutsche Spediteurbedingungen*, 2017, 4.1-4.9.

봉하거나 세관의 요청에 따라 선납을 이행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발송인은 운송인에게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공식적인 처리, 특히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391]

3) 규제

□ 독일 및 영국 모두 세관대리인과 운송인에 대한 기본요율 또는 기본 보수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를 두지 않고 있음

□ 또한 독일 및 영국 모두 운송자 및 세관대리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면허의 취소, 정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독일의 경우 「상법」상에 일부 책임제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책임한도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독일의 경우 「상법」 내에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책임을 제한하고 있음[392]

-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의 경우 중량 1㎏당 8.33SDR이 책임한도임[393]
- 다만 연착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한도액은 운임의 3배임[394]

4) 교육

□ 독일과 영국 모두 세관대리인 또는 운송인이 되기 위한 의무적인 교육제도는 없으나 물류 및 통관업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HMRC에서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391) HGB Section 413
392) 김지환, 「육상운송법의 국제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8집 제2호, 2015. 7. 17., pp. 141~142.
393) HGB Section 431(1)(2)
394) HGB Section 431(3)

□ DSLV에서는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 독일 세관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음

○ 3년간의 교육과정으로 관련 학위 취득 또한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395]

○ 교육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보안, 운송 및 물류 서비스, 화물운송, 창고물류, 집합물 및 시스템 운송, 국제운송, 물류 서비스, 계약, 책임, 보험, 위험 물질, 보호 및 안전, 결제 및 회계, 세관 및 대외경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이루어짐

□ BIFA에서는 HMRC의 세관보조금제도(Customs Grant Scheme)를 통해 수출입 신고, 통관 절차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관과 관련한 일정 수준의 교육경험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음[396]

○ 교육은 국제무역, 경영책임, 수출단계, 수입단계, 관세평가, 물품코드, 통관코드, 수출입 통제, 환급, 원산지, 간이통관 등에 대해 이루어짐

□ HMRC에 등록한 무역업체가 일정한 조건을 갖출 시 HMRC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BIFA의 세관대리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음[397]

○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세관대리인 교육과 관련된 HMRC의 세관보조금제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훈련보조금(training grant), IT 개선 보조금(IT improvement grant), 고용보조금(recruitment grant)의 세 가지 유형임

○ 훈련보조금 자격 요건: 수입자를 대표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했거나 할 예정인 자,

---

395) DSLV, "Verordnung über die Berufsausbildung zum Kaufmann für Spedition und Logistikdienstleistung/zur Kauffrau für Spedition und Logistikdienstleistung," Vol. 26, 2004. 7.. https://www.bibb.de/tools/berufesuche/index.php/regulation/kaufmann_spedition_logistikdienstleistung_2004.pdf, 검색일자: 2020. 7. 1.

396) BIFA, *Guide to Preparing to Become a Customs Agent*, 2019. 2., p. 1.

397) Customs Grant Scheme, https://www.customsintermediarygrant.co.uk/training, 검색일자: 2020. 6. 23.

EU 내외부에서 수출입을 직접 신고하는 자, 세관 절차를 통해 물품을 이동시키는 하역자

○ IT 개선 보조금 자격 요건: 중개자로서 전자시스템으로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고객을 위해 신고를 진행할 예정인 자, 250명 이하의 직원, 연간 매출 최대 5천만파운드, 대차대조표 합이 4,300만 파운드 이하

○ 고용보조금 자격 요건: 고객을 대리하여 통관을 하고자 하는 업체(업체 내부의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보조를 받을 수 없음), 2019년 10월에 만 1년이 되는 업체, 운송자, 특송운영인, 관세사 등 수출입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입신고를 이행한다는 위임장을 HMRC에 제출한 자

○ 자격요건에 대해 지원자들(director/owner/senior staff)이 현재 또는 과거에 HMRC의 요건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세금연체 여부, 제세금 지불기한 미준수 여부, 사업관리 및 개인파산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함

○ 국가 의무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하는 교육, 예를 들어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HMRC의 법적 요건(예: VAT)과 관련된 교육은 지원에서 제외됨

□ 특히 국제물류운송인 관련 교육에도 통관과 관련하여 품목분류, 제세금 납부, 통관 절차 등의 중개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398]

○ 특히 이러한 교육은 공신력이 있는 교육으로서 국가 공인등급(Edexcel at BTEC Level 2) 및 인증(certificates)이 제공됨

○ 통관코드(Customs Procedure Codes)의 구조 이해 및 정확한 CPC의 적용, 정확한 품목분류, 수출입 신고 시 제세금 납부 및 정확한 금액 산정, 세관의 이해, 세관제도, 수출입 절차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398) BIFA, “Freight Forwarding Procedures courses,” https://www.bifa.org/training/freight-forwarding 및 BIFA, https://www.bifa.org/training/freight-forwarding/btec-intermediate-award-in-multimodal-international-freight-procedures-live-mft1web/course-detail?l=y&i=340/20WEB, 검색일자: 2020. 6. 23.

다. 기타

□ EU는 2012년부터 세관대리인의 역량과 자격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국제관세사 및 세관대리인 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Customs Brokers and Customs Representatives, 이하 CONFID)[399]에서 세관대리인의 행동 강령(Customs Brokers Code of Conduct)에 대해 발표하였음

○ 본 강령은 세관대리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칙, 가치관 및 행동수칙, 직업윤리, 직무수행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고객의 권리뿐 아니라 세관대리인의 수입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CONFIAD에서는 본 내용을 EU 「관세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EU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관대리인의 역할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의가 있음

□ 본 행동강령은 총 13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용범위, 세관대리인의 일반원칙 및 기본역할, 활동요건, 윤리적 원칙, 전문행위표준, 정보의 기밀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광고에 대한 국가 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세관대리인이 관세뿐 아니라 식물 및 수의 관련 당국, 그리고 국제 무역과 관련된 절차 등 세관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적절하게 준수하고 불필요한 오류 및 통관 지연을 피해 물품 통관 간소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400]

○ 또한 국제 무역에서 세관 및 조세 관련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부패 및 기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세관 당국과 협력해야 함

○ 업무수행의 조건으로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고,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관계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받은 정보를 공유해야 함

---

399) 1982년 유럽 세관대리인의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전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유럽 수준에서 입법 및 관세 규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400) Ewa GWARDZIŃSKA, “Standardization of Competencies and Qualification of Customs Representative of the EU member states”, *Customs Scientific Journal*, Vol. 6, No.1, 2016. 1., pp. 58~60.

Ⅴ. 국제 비교 및 소결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수요와 필요에 따라 국가별로 적합한 통관업자 담당자에 대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 설립과 관련한 역사적·경제적 배경이 국가마다 상이함에 따라 통관업자 제도의 주요내용과 운영실태도 다양한 형태를 보였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은 관세사 자격 면허제도가 존재하며 관련 자격의 의무와 책임 및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음

○ 독일(EU) 및 영국의 경우 세관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전문자격사 제도가 아니며 국제물류운송인[401]이 위임장을 득해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격에 대한 의무, 처벌 등과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음

○ 국제물류운송인의 경우 주요국은 자격사 면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미국, 우리나라, 중국의 경우에만 등록 시(미국의 경우 면허) 자본 및 일정 조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었음

□ 주요국의 관세사 및 국제물류운송인은 국제사회의 모범관행에서 제안하는 직무범위 내에서 통관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국가별 특징에 따라 일부 업무의 차이는 존재하였음

○ 관세사는 수출입통관, 관세 및 제세금 납부 및 환급 신청, 품목분류, 가격평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결정 또는 수출입과 관련한 정부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자문, 수출입 데이터 및 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국제물류운송인은 물품의 운반, 혼합, 보관, 처리, 포장뿐 아니라 세관 및 비용

401) 운송업종사자에 대한 국제적인 공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바, 제Ⅴ장에서는 편의상 국제물류운송인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음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독일(EU), 영국의 경우 자격 면허 없이 위임장에 따라 통관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었음

□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에서 사명(자격의 공공성)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바, 공공성을 보다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관세사 자격 제도에 대한 특수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모범관행 및 주요국의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는 「관세사법」에서 관세사에 대해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 중점 추진과제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국민안전 보호, 대외거래질서 확립으로 공정한 무역 생태계 실현, 관세행정 지능화로 Smart Customs 구현 등을 선정하였음[402]

○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에 기반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① 통관업 관련 각국의 제도 ② 국제 물류 환경 내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③ 기술혁신에 따른 관세행정 등에 대해 국제적인 모범관행과 각국의 통관업 담당자에 대한 제도를 살펴보았음

1.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

가. 진입: 자격 및 교육 요건

□ 국제적인 모범관행에서 제안하는 관세사 제도와 한국의 관세사 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관세사 제도는 IFCBA와 WTO가 권고하는 있는 모범관행의 내용

402) 관세청, 『2020 관세청 업무계획』, 2020. 2. 25., p. 11.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단 IFCBA의 관세사 자격에 대한 모범관행 모델에서는 관세사가 통관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의 통관 관련 경험과 법에서 규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제안하고 있음

○ WCO 관세사 가이드라인에서는 관세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면허 기준 영역으로 최소한의 업무 경험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조사국의 경우 일본 및 중국은 해당 업무 관련 경력 또는 관련 업무를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조사국 중 중국의 경우 관세사가 통관대행기업에 고용을 지원할 시 2년간의 관세사로서 업무 수행 시 밀수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통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통관사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업무 운영이 요건임

□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사 시험 통과 후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과 1년간 8시간의 연수교육을 두고 있으나 국제적인 모범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며, 자격사 이외의 별도 업무경력 또한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관세사법」에 관세사의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후 재개업하는 관세사에 대한 보수 교육 등에 대한 보완책은 부족하며, 미등록 관세사에 대한 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관세사법」상 연수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시 주의 처분만으로 종결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이행의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태료 처분 등과 같은 강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나. 서비스 제공: 통관취급법인

□ 우리나라는 통관취급법인 제도를 두어 국제물류운송업체가 관세사를 고용하여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통관취급법인은 과거 우리나라에 관세사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도입된[403] 제도로서, 「상법」상 일반적인 물류기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통관업무를 허용한 법인을 의미함[404]

○ 조사대상국은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국제물류운송업체의 통관취급 여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 또는 제한하고 있었음

- 조사대상국 중 중국은 국제물류운송업체가 별도의 등록을 거치는 경우 통관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통관취급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통관취급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수출입물류의 제반 업무인 국제물류운송주선, 포장, 적하보험 가입 대행뿐 아니라 수출입 통관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특히 소속 관세사의 책임감 및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함[405]

○ 통관취급법인 소속 관세사는 기업의 이윤 확보를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주와 국가기관의 중간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필수적인 통관은 복합운송 과정 중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므로, 통관 과정의 원활성은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403) 한상현, 「통관취급법인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 『2019년 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한국관세학회, 2019. 12. 13., p. 11.
404) 한상현, 2019, p. 11.
405) 신성식, 「국제물류환경변화에 따른 관세사 역할 증진 방안」, 『계간 관세사』, 봄호, 2007, pp. 13~20.

□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 고객 요구의 고도화 및 아웃소싱 확대로 물류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One-stop Service 제공 요구가 증가하는 바, 이를 위해 관세사 및 국제물류운송업체가 업무 제휴를 맺고 협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국제물류운송업체는 운송 부문에, 관세사는 통관 부문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406]

○ 관세사는 국제무역시장에서 통관되는 물량의 이동 현황 파악, 각국의 특수한 거래 상황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 국제물류운송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며 국제물류운송업체는 관세사와 협업을 통해 통관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야함

- 특히 관세 환급 및 평가, 조사 조력, 원산지, 지적재산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검사 및 검역 이행 등과 같은 분야에서 관세사의 전문성을 세분화하여 전담 관세사를 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제 물류 환경

가. 수입자 및 관세사 간 보안환경

□ WCO 관세사 지침에서는 일반적인 관세사의 의무와 책임에서 고객 알기 제도(Know Your Customer)를 통해 수입자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407]

□ 조사국 중 미국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수입자로부터 위임장을 득할 시 수입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관세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세부 절차 규정을 제정할 예정임

○ 본 규정은 불법물품 또는 위조품의 수입, 관세 회피, 지적재산권 침해, 반덤핑 및

406) 신성식, 2007, pp. 20~21.
407) WCO, 2018, pp. 11~12.

상계관세 위반 등 불법행위를 이행하고자 기업을 설립하려는 수입자가 화주의 정보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관세사와 결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특히 이와 관련된 19 U.S. Code 1641(i) 수입자 확인 규정의 위반은 절차 규정이 제정되면 관세사의 자격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불법 수입자와 관세사의 결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CBP에서는 19 U.S. Code 1641(i)에 의거하여 관세사 수입자 인증 프로그램(The Broker-Known Importer Program)을 진행하고 있음

- CBP의 평가 리스트에 따라 관세사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지적재산권, 평가 등과 같은 분야에서 수입자가 해당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도 고객의 불법행위로 인해 관세사의 위임 종료(포기) 시 CBP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관세사의 의무를 신설하여, 허위자료나 거짓정보로부터 미국의 물류환경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무역을 악용한 불법 사익추구 행위(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비자금 조성, 위조물품 수입, 불법 원산지 표시 등)를 집중 단속하여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물류 환경의 보안을 증가시키고자 함[408)]

□ 관세사는 관세납부와 관세조사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세사를 대상으로 물류 보안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17년,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진술을 하지 않도록 관세사의 성실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관세사의 업무 보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임

○ 이와 관련하여 WCO 관세사 지침 및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불법행위를

408) 관세청, 2020, p. 16.

취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 관세사 및 세관이 밀접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수입자-국제물류운송인-관세사 간 보안환경

□ 우리나라는 국제물류운송인, 수입자로부터 관세사가 업무를 위탁받아 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 위탁 시 수입자의 물류 관련 정보가 오류 없이 전달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2020년 성실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수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하였음

○ 품목분류(HSK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 따라서 본 시스템의 도입으로 물류흐름 전반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물류운송인 및 수입자와 관세사 간 정보 전달 오류를 감소시켜 신속·정확한 통관으로 물류 보안을 증대시키고자 함

○ 특히 세관에서는 본 제도를 통해 관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품명 오류, 부정확한 신고 등을 감소시켜 통관 불편(검사 및 지연)을 해소하며 추가 비용(세금 및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함

-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경우에는 오류점수 부여를 통해 관세사가 전자통관이 아닌 종이서류로 직접 세관에 제출하게 만들 수 있는 P/L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 집중관리품목 700개에서 향후 세관장확인품목 4,800개, HSK 10단위 전 품목 1만 2천개로 확대할 예정임
- 세관은 AI 통관행정, 무역통계, 위험선별 등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관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별도의 성실신고시스템은 현재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위임장 교부 방식에 따라 관세사와 국제물류운송인 간 책임 범위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 조사국 중 미국 및 중국의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운송인이 아닌 수입자 및 환급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위임장을 받아야 통관업을 시행할 수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기존에는 국제물류운송인이 위임장을 받아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시간 절감을 비롯하여 신분 도용, 물류 공급망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사가 직접 수입자로부터 위임장을 전달받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물류운송인이 관세사에게 수입자의 위임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

다. 국경 간 보안환경

□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수입수량 할당, 각국의 고유인증, 검역, 검사 제도를 통하여 관세 외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인 비관세 장벽이 증가하고 있음[409]

○ 비관세 장벽은 수입금지, 수량규제 등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비관세 장벽은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품목 범위가 각각 다르고 각국의 법령, 국내 제도, 당국의 판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함

409)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비관세 장벽이란?」,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2, 검색일자: 2020. 8. 4.

□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출의 경우에는 농·식품 등이 제품 특성상 검역·위생, 인증, 등록 등 각국 고유의 비관세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의 물품이 수출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410]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인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검사, 검역, 인증, 확인 등의 대상 및 품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따라서 물품의 국경이동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관세사는 수출신고를 비롯하여 검역·검사 및 각종 인증업무 대행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관세사의 잠재적인 업무범위로서 비관세 장벽의 우려가 있는 분야인 무역컨설팅 수요가 증가할 것임

○ 각국의 법과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관세사는 국제적인 통관 및 관세 관련 조약·협정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수입국의 수입요건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3. 기술혁신에 따른 관세행정

□ 최근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이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관세행정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 및 자동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단순 반복 작업인 수출입신고 중심의 전통적인 통관업무는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 광학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ader, OCR) 및

410) 정혜선, 「비관세장벽 넘어 수출길 닦는 농식품 수출」, 『TRADE BRIEF』, No. 24, 한국무역협회, 2016. 8. 22., p. 2.

인공지능과 연계된다면 수출입 신고상 오류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관세행정 전 분야에 접목하여 Smart Customs를 구현하고자 함[411)]

○ 저위험물품 수입통관심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통관리드타임을 감소시켰으며, 수출통관과 FTA 원산지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인공지능 접목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이뿐만 아니라 수출입·외환·기업재무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위험 발생 징후를 조기 탐지할 수 있는 AI 기반 무역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음

□ 기술 향상으로 인한 관세행정의 변화는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412)]

○ RPA 도입에 따라 관세사 기본직무인 수출입 통관업무의 투입 노동력은 줄어드는 반면, 신고인과 관련된 법제가 강화되며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 관련 법령 준수 컨설팅에 대한 업무 중요성이 증가할 것임

○ 특히 처분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관세행정심판업무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사는 관세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보다 더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 직무 범위 확대(수출입통관 RPA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포함 여부), 「관세사법」의 수출입 신고 규정의 강화 등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411) 관세청, 2020, p. 17.

412) 김태인·김중근, 「향후 RPA 도입이 관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한국관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관세학회, 2020. 6., pp. 59~61.

참고문헌

강현철·김상중·김은경·박기병·유성재·이시우·장병일·정승환, 『2006 독일 법령용어 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6.

관세청,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관세청, 2014.

____, 『2020 관세청 업무계획』, 관세청, 2020.

김두형, 「관세사제도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방안」, 『한국관세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관세사학회, 2016, pp. 9~44.

김선철·이길남, 「복합운송주선인의 화주에 대한 책임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지』, 제9권 제2호, 한국물류학회, 2009, pp. 27~46.

김중근, 「관세사제도 모범관행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관세학회, 2017, pp. 31~47.

김지환, 「육상운송법의 국제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8집 제2호, 2015, pp. 139~161.

김태인·김중근, 「향후 RPA 도입이 관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한국관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관세학회, 2020., pp. 59~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Global Market Report 14-051』, 2014. 12. 12., p. 2.

배백식,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전략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2007.

신동선·김건영, 『EU 주요국 물류서비스 현황 및 진출 확대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9., pp. 11~15.

신성식, 「국제물류환경변화에 따른 관세사 역할 증진방안」, 『계간 관세사』, 봄호, 한

국관세사회, 2007, pp. 6~21.
이규훈,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6.
이기준·송희영, 「Freight forwarder의 역할과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인프라 확충방안」, 『관세학회지』, 12-1, 한국관세학회, 2011.
이제현, 「국제물류주선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017, pp. 785~804.
정재호,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운영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정혜선, 「비관세 장벽 넘어 수출길 닦는 농식품수출」, 『Trade Brief』, No. 24, 한국무역협회, 2016, pp. 1~7.
최영석, 「일본의 화물이용운송사업과 우리나라의 국제물류주선업 제도」, 『계간 해양수산』, 제3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pp. 122~14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한상현, 「통관취급법인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 『2019년 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자료집』, 한국관세학회, 2019, pp. 1~83.
황진회·전형진·이언경·최영석·홍수진·양근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Ari-Pekka HAMERI, Philippe WIESER, Juha HINTSA and Ximena GUTIERREZ, "New Roles For Customs Brokers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portation Logistics*, Singapore, 27~29 July, 2005, pp. 1~15.
BIFA, *Guide to Preparing to Become a Customs Agent*, 2019. 2.
CONFIAD, *The Impact of the Customs Representation on the EU's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2007. 5. 30.
DSLV, "Delegated Regulation(EU) 2015/2446," *Allgemeine Deutsche Spediteurbedingungen*, 2017. 4. 1.~4. 9.

European Commission, *CASE AT.39462 – Freight Forwarding*, 2012. 8.

Ewa Gwardzińska, "The role of customs brokers in facilitating international trade," *World Customs Journal*, Vol. 8, No.1, 2014. 3.

___, "Standardization of Competencies and Qualification of Customs Representative of the EU member states," *Customs Scientific Journal*, Vol. 6, No.1, 2016. 1.

FIATA, *Model Rules for Forwarder*, 2019. 10.

IFCBA, *Best Practice Model for the Licensing of Customs Brokers*, IFCBA, 2009, https://ifcba.org/sites/default/files/ctd_files/BestPracticesModel_LicensingCustomsBrokersENGLISH.pdf, 검색일자: 2020. 5. 26.

Maika Watanuki, "Review of Logistics Service Regulations for Freight Forwarding Business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7401, World Bank Group, 2015. 8.

WCO, *WCO Study Report on Customs Brokers*, WCO, 2016. 6.

___, *WCO Customs Brokers Guidelines*, WCO, 2018. 6.

___, *GIOSSARY OF INTERNATIONAL CUSTOMS TERMS*, 2018, WCO, http://www.wcoomd.org/-/media/wco/public/global/pdf/topics/facilitation/instruments-and-tools/tools/glossary-of-international-customs-terms/glossary-of-international-customs-terms.pdf?db=web,검색일자: 2020. 5. 2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main.aspx

해외물류시장 정보 포털, http://www.worldlogis.net

미연방해사위원회, https://www.fmc.gov

미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

영국 국제무역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https://www.great.gov.uk
일본통관사연합회, http://www.tsukangyo.or.jp
중국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
코넬대학교 법령정보(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

BIFA, https://www.bifa.org
CBP, https://www.cbp.gov
Customs Grant Scheme, https://www.customsintermediarygrant.co.uk/
Customs Mobile, https://www.customsmobile.com
DSLV, https://www.dslv.org
EU 법령포털, https://eur-lex.europa.eu
HMRC, https://www.gov.uk
IFCBA, https://ifcba.org
NCBFAA, https://www.ncbfaa.org
WCO, http://www.wcoomd.org

관세연구 20-01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통관업 담당자 관련 제도 비교연구

발 행 2020년 10월 31일
저 자 정재호 · 노영예 · 변달수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BN 978-89-8191-649-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